



2022 (사)한국조세법학회 -제31차-

춘계학술발표대회

일시 : 2022년 6월 4일(토) 13:00 ~ 19:00

장소 : aT센터 4층, 창조룸-1

후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IM & CHANG  Lee & KO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한태평양  WIZ LAW GROUP  SAMIL | 삼일회계법인  KPMG  Deloitte. 달로이트 안전회계법인


 Crowe 한울회계법인  광교세무법인 GWANGGYO.BIZ  이안세무법인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ShinhanLife¹

 KORAMCO 리츠 | 부동산펀드 | 부동산신탁  한국세무사회  KICPA 한국공인회계사회

 KSD  한국예탁결제원  은행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BANKS  KILF | 한국지방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법제처

주최

 KOREAN SOCIETY OF TAX LAW 1985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



2022년 제31차 춘계학술발표대회

모시는 글

한국조세법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는 지난 해에 이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행동수칙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어 금번 학술발표대회를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거쳐 5월 10일 윤정부가 출범되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정치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선거과정에서 국민의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세제 등 조세정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제31차 춘계학술발표대회는 ‘문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윤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선정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에 관한 3편의 논문과 기업세제·금융세제 등 관련 조세정책 3편의 논문 등 총 6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에 이어 연구윤리교육이 진행됩니다.

우선 제1부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제1주제인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현황”은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권성오 부연구위원님께서, 제2주제인 “양도소득세제·취득세제 및 주택임대소득세제의 정책방향”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정지선 교수님과 동아대 정재현 교수님께서, 제3주제인 “부동산보유세제의 정책방향”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식 교수님과 대구시청 김민수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부 기업세제 및 관련 조세정책의 제1주제인 “기업세제 및 국제조세의 정책방향”은 서울여대 이성봉 교수님께서, 제2주제인 “금융세제 및 가상자산세제의 정책방향”은 한림대 문성훈 교수님께서, 제3주제인 “개인소득세 및 상증세제의 정책방향”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 교수님께서 각각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연구윤리교육은 우리 학회의 편집위원장이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식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뜻깊은 학술발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김재진 원장님, 좌장을 맡아주신 김영룡 차관님·김완석 교수님, 사회·발제·토론을 맡아주신 연구자분들, 후원기관, 학회 고문님·자문위원님 및 학술발표대회 준비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학회 임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발표된 연구 성과물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조세법학회가 조세법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4일

(사)한국조세법학회 회장 **김 병 일**

2022년 춘계학술발표대회 조세정책분과 위원장 **이 동 건 드림**



2022년 제31차 춘계학술발표대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일 학회장님, 한국조세법학회 회원 및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조세법학회가 1982년 발족한 후 마흔 번째로 맞이하는 2022년 생동의 계절, 귀중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한국조세법학회는 지난 40년 간 조세법에 대한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실정법 제도 및 조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하며 조세학문 분야의 핵심 학회로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오늘 학술발표대회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고 새 정부가 막 출범한 가운데, 과거와 오늘을 돌아보고 더 밝은 내일을 이끄는 조세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의 쟁쟁한 전문가 분들이 모이신 만큼 팬데믹 이후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

지난 2년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던 코로나19 충격 파장이 점차 잦아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잃어버렸던 일상이 점차 회복되면서 최악의 팬데믹 시기를 지나 엔데믹으로 향하고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고물가와 긴축,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물가는 급격히 치솟으며 서민 생활과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탄소중립 등 인구·산업·경제 구조의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은 오히려 지연되고 있고,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오래된 병폐 역시 심화하며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3년 0%대로 추락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합리적 법인세율 조정과 효율적 조세감면제도 운영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 부동산 관련 세제 정비 및 적정기능 부여를 통한 주거안정화 등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 골든타임을 준비하며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변화시켜 대한민국의 약진을 담보하고 국민의 안락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특히 역대 정부가 고전을 면치 못했던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조세정책 분야의 묘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업이 최대의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더욱 활발히 투자에 뛰어들 수 있도록 관련 조세정책을 고민하는 일도 우리의 몫입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계 정밀화와, 넓은 세원 확보의 첫 걸음인 소득세 개편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일도 더 늦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얻을 수 없다.’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그것을 고쳐나가는 인간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작가 존 골즈워디(John Galsworthy)의 말입니다.

오늘 한국조세법학회가 마련해주신 토론의 장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넘어 우리 경제의 청사진을 새롭게 설계하는 건설적인 아이디어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세계적·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춘 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재진 배상

1) OECD 장기 재정 전망, 2021.11.

(사)한국조세법학회 2022년 제31차 춘계학술발표대회

☉ 일 시 : 2022년 6월 4일(토) 13:00 ~ 19:00

☉ 장 소 : aT센터 4층, 창조룸-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aT센터)

사회 : 이동건 ((사)한국조세법학회 조세정책분과위원장)

세 부 일 정

- 13:00 ~ 13:10 개회사 (김병일 (사)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 13:10 ~ 13:20 축 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대주제] 문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윤정부의 조세정책 방향

<1주제 :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 좌 장 : 김영룡 (前)재정경제부 세제실장·국방부 차관
- 13:30 ~ 14:00
 - 제 목 :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현황
 - 발표자 :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14:00 ~ 14:30
 - 제 목 : 양도소득세제·취득세제 및 주택임대소득세제의 정책방향
 - 발표자 :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현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14:30 ~ 15:00
 - 제 목 : 부동산보유세제의 정책방향
 - 발표자 :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수 (대구시청 법무담당관실, 법학박사)
- 15:00 ~ 15:50
 - 종합토론 >
 - 김낙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 경영학박사·세무사·(前)기재부 세제실장·(前)관세청장)

- 김인수 (매일경제 논설위원)
 -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세무사·세무학박사)
 -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5:50 ~ 16:00 Break Time
- <2주제 : 기업세제 및 관련 조세정책>**
- **좌 장** :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 **제 목** : 기업세제 및 국제조세의 정책방향
 - **발표자** :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 목** : 금융세제 및 가상자산세제의 정책방향
 - **발표자** :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 목** : 개인소득세 및 상증세제의 정책방향
 - **발표자** : 최 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종합토론 >**
- 김두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경영학박사·법학박사)
 - 손영철 (세무사, 법학박사)
 - 이종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영록 (삼정회계법인 고문, 경제학박사·(前)기재부 세제실장)
- 17:30 ~ 18:20
- 18:20 ~ 18:30 Break Time
- < 연구윤리교육 >**
- 연구윤리교육 (이동식 (사)한국조세법학회 편집위원장)
- 18:50 ~ 19:00 폐회사 (김병일 (사)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 사정에 따라 좌장 및 토론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 1주제 :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현황

• 권 성 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현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CONTENTS

- 01 들어가며
- 02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 03 주요국의 보유세
- 04 마치며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들어가며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01 들어가며

- ◆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제가 주목을 받음
- ◆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는 주택투자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부동산 관련 정책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과 정권에 따라 관련 정책방향이 달라지면서 장기보유 및 증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단기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이용한 정책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4

01 들어가며

- ◆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순이익의 흐름을 감소시켜 부동산 가격을 하락 시킬 수 있음
 - (조세의 자본환원) 이론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그 자산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순수익 흐름의 현재가치이며,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면 이러한 순수익의 흐름이 감소하여 해당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됨
 - 단, 그 정도는 임차인에 대한 세부담 전가,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 경제주체의 합리성, 정책의 현실화 및 일관성에 대한 기대 등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음(Elinder and Persson 2017)
 - 극단적으로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완전히 전가되는 경우,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경제주체가 보유세 강화를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조세의 자본환원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 주요국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02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가. 미국

- ◆ 미국은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하여 과세함
 - 자본이득(이하 '양도소득')이란 개인적 용도 또는 투자목적으로 소유한 자본자산(capital assets)을 처분할 때 발생한 소득으로 주택, 주식 및 채권 등이 있음

-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자산보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하 보유한 '단기양도소득'과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장기양도소득'으로 구분함
 - 단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경상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장기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과세함

02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가. 미국

- ◆ 주거용 주택(Principal Residence/Main Home)의 양도로 의한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부합산 신고자는 최대 50만 달러(독신 신고자의 경우 최대 25만 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양도 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 중 최소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주택
 - 양도일 이전 2년 동안 이전 소유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을 처분하였을 때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경우
 - 지난 5년 이내 동종자산의 교환을 통해 취득한 자산이 아니며, 국외 거주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 ◆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경우 사실상황(facts and circumstances)을 확인하여 주거주주택 여부를 판단
 - 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장소이지만, 세금 신고 등의 주소지, 직장, 가족의 거주지 등도 판단의 근거로 이용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7

02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가. 미국

- ◆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손익은 양도가액에서 양도비용을 차감한 실현가액에서 조정된 장부가액(total cost basis)을 차감하여 산출함
 - 양도가액(sale price)은 양도대가로 받은 현금, 기타 재산 및 서비스의 공정가치, 양도된 자산에 담보된 부채 등을 포함하며 양도비용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말함
 - 조정된 장부가액이란 주택 취득 시 지급한 현금, 채무, 기타 재산이나 서비스, 자본적 지출에 의한 가치 증가분 등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감가상각, 홍수 또는 화재로 청구한 손상에 따른 공제액 등을 차감함
- ◆ 양도차손(capital loss)은 우선적으로 양도차익과 통산한 후 해당 과세연도 경상소득에서 최대 3,000달러(부부개별신고 1,500달러)를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 공제받지 못한 양도차손은 기한 제한 없이 소멸할 때까지 이월(carryover)하여 공제할 수 있음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8

02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가. 미국

- ◆ 세율은 자본자산의 보유기간과 신고자의 신고지위(독신/부부합산 등)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단기양도소득은 경상소득과 합산하여 10~37%의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 장기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납세자의 신고지위에 따른 경상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경상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는 낮음
 - 장기양도소득의 최대 양도소득세율은 구간별로 0~20%
 - 한편 경상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이 10%~12%의 구간에 있는 신고자의 장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02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나. 영국

- ◆ 영국은 자본자산 처분소득에 대하여 일반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구분하여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로 분류과세함
 -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거주주택을 제외한 사업용 부동산과 임대용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규모가 큰 주거주택 등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자본이득세가 부과됨
- ◆ 영국의 경우 장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지원은 없으나, £12,300에 해당하는 연간공제가 있음
 - 과세대상 자본이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비용 등 공제가능비용과 자본손실을 차감하여 산출
 - 자산의 양도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연도의 자본이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미공제분은 이후의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02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나. 영국

- ◆ 부동산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소득세 적용세율이 기본세율(20%)인 납세자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8% 세율을 적용
 - 소득세 적용세율이 기본세율 이상(40% 및 45%)인 납세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28%의 세율을 적용

- ◆ 주거용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private residence relief) 규정을 두고 있음
 - 주택 소유자의 유일하거나 주된 거주용(only or main residence)으로 사용되었던 주택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부담을 면제
 - 주거주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시 금액한도나 비과세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과세 면제되는 양도소득은 소유기간 중 유일하거나 주된 거주용으로 사용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단 하나의 주택만이 비과세되며, 비과세를 적용 받을 주거주주택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음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1

02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나. 영국

- ◆ 영국은 비과세제도에 있어 보유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보유기간 내내 거주할 것을 요구
 - 비과세혜택이 보유기간 동안 단독주택 또는 주요 거주지로 사용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적용되는 것
 - 단, 주거주주택으로 보유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간이 있음
 - 주거주주택에 대한 감면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
 - 실제 주된 주택이었던 기간과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을 추가로 감면 허용하는 기간(final period exemption) 또는 실제 주된 주택이 아니었던 기간 중 짧은 기간을 비과세 적용 기간에 포함하여 감면 금액을 산출

$$\text{감면금액} = \text{양도차익} \times \left[\frac{\text{주된 주택기간} + \text{Min(감면 허용 기간, 실제 요건 불충족 기간)}}{\text{보유기간}} \right]$$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2

02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다. 독일

- ◆ 독일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사적 양도거래 (Private Veräußerungsgeschäfte)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다만, 취득 또는 완공 이후 양도 시까지 주거용으로만 사용한 부동산과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이전 2년 동안 주거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비과세됨
 -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는 512유로에서 2008년 세제개정 이후로 600유로로 인상되었음
 - 비과세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짐
- ◆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함
 - 양도가액이란 양도인이 화폐 또는 화폐가치로 당해 자산에 대하여 획득하는 모든 반대급부를 말하며, 취득원가는 취득 시 거래가액 뿐 아니라 중개인수수료 등 취득 시 비용을 포함하며 공제된 손상 및 감가상각은 차감함
 - 광고선전비 등 양도로 발생한 필요경비는 양도소득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음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3

02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다. 독일

- ◆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 내의 다른 유형의 소득과 통산될 수 없으며, 동일한 유형의 양도차익 내에서만 통산할 수 있음
 - 또한 공제받지 못한 양도차손은 직전 과세기간 또는 다음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의 납세자의 사적 양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과의 통산을 허용함
- ◆ 소득세법 제23조에 의해 납세의무가 있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 0%/14%/42%/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 신고지위(독신/부부합산)에 따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가 다름
 - 개인소득세에 5.5%의 부가세(solidarity surcharge)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4

02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라. 프랑스

- ◆ 프랑스는 양도소득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으로서 가족단위로 합산하여 분류과세함
 -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는 건물 또는 토지,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음
 - 비과세 부동산으로는 양도자 소유의 부동산 중 주된 주택으로 이용된 부동산, 양도가액 15,000 유로 이하인 부동산 및 이와 관련된 권리 등이 있음
 - 공동명의 부동산은 양도가액이 명의자수×15,000유로 이하라면 비과세함
 -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손실은 통산할 수 없음
- ◆ 양도소득세율은 19%의 단일세율이나 17.2%의 사회분담세(prélèvements sociaux)가 추가되어 실제로는 36.2%의 세율이 적용됨
 - 과세표준이 5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2~6%의 추가세율을 가산하여 과세함

02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라. 프랑스

- ◆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부대비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법률이 정한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함
 - 양도가액은 등기부상 양도가액(prix de cession)에 양수인으로부터 양도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을 더하고 양도부대비용(중개수수료·공증비용 등)을 제한 값임
 - 양도가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시장가치와 일치하며, 만일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시가로 조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신고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 취득가액(prix de revient)은 등기부상 취득가액에 취득부대비용(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을 더하고 자본적지출 금액을 더하여 산출함
 - 취득부대비용을 입증할 수 없다면 취득가액의 7.5%를 취득부대비용으로 함

02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라. 프랑스

- ◆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부대비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법률이 정한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함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을 공제하는 제도로 보유기간이 2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30년 이상인 경우 사회부담세도 면제함
 -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기간이 5년 이하라면 공제율은 0%이며 6년 이상 21년 이하라면 매년 6%, 22년이 경과했다면 4%임
 - 사회부담세는 보유기간이 5년 이하라면 공제율은 0%이며 6년 이상 21년 이하라면 매년 1.65%, 22년에는 1.6%, 22년 초과 30년 이하라면 매년 9%임

02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마. 일본

- ◆ 일본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함
- ◆ 부동산 양도소득은 보유기간 5년을 기점으로 장기양도소득과 단기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며, 세금도 장기·단기 분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 장기양도소득은 해당 자산을 양도한 과세연도 1월 1일에 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것을 의미하며, 단기양도소득은 해당 자산을 양도한 과세연도 1월 1일에 보유기간이 5년 이하인 것을 의미함

02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마. 일본

- ◆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취득비, 양도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며, 양도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
 - 취득비는 양도한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한 금액과 취득한 후 설비·개량에 소요한 비용을 의미함
 - 취득비는 토지건물 구입대금과 취득에 소요한 금액에서 건물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 또는 양도가액의 5% 중 더 큰 금액으로 함
 - 양도비용은 양도에 소요한 비용으로 증개수수료, 등기비용, 임차인 입거·퇴거비용, 토지 양도로 인해 건물 파손손실 등을 의미함

02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마. 일본

- ◆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취득비, 양도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며, 양도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
 - 특별공제액은 각 특례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데, 실거주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최고 3천만엔을 공제할 수 있음
 - 총 6가지 특례가 있으며, 특례별로 특별공제액 한도를 두되 총 특별공제액은 연간 5천만엔을 한도로 함
 - 이 중 5가지 특례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대한 것이며, 나머지 1가지 특례는 실거주하던 부동산(거주기간, 보유기간 요건은 없음)을 매각한 경우에 대한 것임
 - 실거주하던 부동산이란 자신이 실거주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 또는 과거 실거주용으로 사용했던 부동산 등을 의미하며, 이 경우 최고 3천만엔을 공제할 수 있음

02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마. 일본

- ◆ 보유기간이 단기인 경우 총 39.63%, 장기인 경우 20.315%의 세율을 적용함
 - 법정 양도소득세율은 단기보유 30%, 장기보유 15%이나, 부흥특별소비세율(양도소득세의 2.1%)와 주민세율(단기보유 9%, 장기보유 5%)를 가산하면 총 부담세율은 39.63%, 20.315%가 됨
 - 참고로 2020년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5%, 10%, 20%, 23%, 33%, 40%, 45%임
- ◆ 10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실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함
 - 자신이 실거주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 또는 과거 실거주용으로 사용했던 부동산(거주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해야 함) 등이 대상임
 - 과세표준 6천만엔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4.21%, 6천만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0.315%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02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마. 일본

- ◆ 또한 부동산 양도손실은 손익통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실거주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은 특례를 두어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의 부동산 양도손실은 동일한 소득 유형 내에서는 손익통산할 수 있으나 다른 소득과는 손익통산할 수 없고 순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없이 원칙임
 - 단, 자신이 실거주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 또는 과거 실거주용으로 사용했던 부동산(거주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해야 함) 등에는 특례를 둠
 - 거주용 자산 교체구입으로 인한 양도손실 이월공제·손실공제 특례와 특정거주용자산의 양도손실 이월공제·손실공제 특례가 있음

03 주요국의 보유세

가. 미국

- ◆ 미국은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재산세(Property Tax)를 부과
 - 재산세는 주택, 토지 등 대부분의 부동산 유형에 대해 카운티, 시, 특별자치구에서 부과하며 재산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초로 함
 - 세율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주별 재산세 세율 중위값으로 볼 때, 세율이 가장 높은 주는 1.89%인 뉴저지이고 가장 낮은 주는 0.18%인 루이지애나임

03 주요국의 보유세

가. 미국

- ◆ 재산세 비과세-경감 규정으로는 노인 주택 소유주 면제(Senior Citizen Homeowners' Exemption, SCHE), 주택 소유주 면제(Homeowner's Exemption, HOX) 등이 있음
 - 뉴욕주에서는 자선 및 종교 단체, 장애인, 노인, 재향군인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감면함
 - 노인 주택 소유자 면제(SCHE)는 65세 이상 소유주와 그 배우자의 총합산소득이 58,399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 나이, 소득, 소유권,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50%까지 감면이 허용됨
 -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HOX 신청을 통해서 감정가액에서 최대 7,0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음

03 주요국의 보유세

나. 영국

- ◆ 영국은 카운슬세, 법인소유 부동산 연간세, 비주거용 레이트 등의 보유세를 부과함
 -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개인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두세 성격이 가미된 카운슬세를 부과하고 법인에게는 중앙정부에서 법인소유 부동산 연간세(annual tax on enveloped dwellings)를 부과함
 -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비주거용 레이트를 부과함

03 주요국의 보유세

나. 영국

1) 카운슬세

- ◆ 카운슬세의 과세표준은 주거용 부동산의 자산가치 평가등급(valuation band)에 따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등급별 결정과세액을 부과함
 - 과세표준은 주거용 부동산 평가등급과 1가구당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수에 근거함
 - 주거용 부동산 평가등급은 평가청(VOA, Value Office Agency)이 평가한 가격범위구간으로,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평가등급은 총 8개임
 - 1가구당 거주하는 성인의 수가 2명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감면함(A full Council Tax bill is based on at least 2 adults living in a home)
 - 성인 1명만 거주할 경우 카운슬세를 25% 감면하고, 빈집이거나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경우 50%를 감면함
 - 카운슬세는 평가등급별로 고정금액을 과세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정하고 등급별 상대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03 주요국의 보유세

나. 영국

1) 카운슬세

- ◆ 카운슬세의 세금감면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은 100%로 감면되며, 청구자격이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음
 - 거주자 산정에서 18세미만 어린이, 직업훈련 또는 학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25세 미만 청소년, 심각한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 외교관 등은 제외 됨

03 주요국의 보유세

나. 영국

2) 법인소유 부동산 연간세

- ◆ 법인소유 부동산 연간세는 25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됨
 - 과세표준은 기준일 당시의 평가가치이며, 평가가치는 5년마다 재평가함
 - 법인소유 부동산 연간세는 자산의 평가가치가 해당되는 구간별 고정금액으로서, 자산 가치에 따라 연간 3,800파운드에서 244,750파운드까지 부과될 수 있음

03 주요국의 보유세

나. 영국

3) 비주거용 레이트(사업용 부동산)

- ◆ 비주거용 레이트는 임대가치(rental value)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
 - 국가기관인 평가청(VOA, Valuation Office Agency)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공시한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함
- ◆ 세율은 단일비레세율(Uniform Business Rate, UBR)로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의 각 의회에서 정한 세율을 각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함
 - 비주거용 레이트는 원칙 상 50.4%를 적용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0.7%p를 인하여 49.1%를 적용함

03 주요국의 보유세

다. 독일

- ◆ 독일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Grundsteuer)와 2주택세(Zweitwohnungsteuer)가 있으며 모두 지방세에 해당함
- ◆ 재산세는 물세로서 국내에 있는 보유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함
 - 재산세는 과세표준기준가액(Einheitswert)에 과표산출승수(Steuermesszahl)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Steuermessbetrag)이 되며, 징수율(Hebesatz)을 적용하여 산출함
 - 과세표준기준가액이나 징수율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하여 결정함
 - 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0.26~0.6%를 부과함
 - 단독주택 : 0.35%(38,346.89유로 이하 구간은 0.26% 적용)
 - 2가구 단독주택 : 0.31% / 나대지 : 0.35% / 농업 및 임업용 부동산 : 0.6%
 - (사례) 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표준기준가액이 40,000유로이고 가산율이 350%인 경우 부동산세는 490유로(40,000x0.35%x350%)임

03 주요국의 보유세

다. 독일

- ◆ 공공기관과 교회 및 공익 및 자선단체 등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 등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함
 - 또한 문화재 및 녹지 공간, 세입자의 파산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 2주택세는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음
 - 베를린의 경우 베를린에 두번째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순임대료(Netto-Kaltmiete)의 15%가 2주택세로 부과됨
 - 베를린의 경우 요양소 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 등 일정한 유형의 주택 거주자에 대하여는 2주택세를 면제함

03 주요국의 보유세

라. 프랑스

- ◆ 프랑스는 1) 부동산세와 2) 부동산 순자산이 130만 유로를 초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부유세를 부과함
- 1) 부동산세
 - ◆ 부동산세(Taxe Foncières)는 지방세로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과 건축물이 없는 부동산을 나누어 과세함
 - 매년 1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함
 - ◆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임대가치(notional rental value)에 공제율,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에 따라 정하는 계수(coefficients)를 곱한 값임
 - 임대가치는 중앙정부가 결정함
 -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의 공제율은 50%, 건축물이 없는 부동산의 공제율은 80%임

03 주요국의 보유세

라. 프랑스

1) 부동산세

- ◆ 세율은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며, 2019년 평균세율을 보면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이 37.23%, 건축물이 없는 부동산이 53.86%임
- ◆ 공공기관이 소유하며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은 부동산세를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면제함

03 주요국의 보유세

라. 프랑스

2) 부동산부유세

- ◆ 2018년 제정법에 의해 순부유세(ISF)를 폐지하고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부유세(IFI: Impot sur la fortune Immobilière, real estate wealth tax)를 신설함
 - 부동산부유세는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이며, 자산의 가치는 과세연도의 1월 1일 공정가치(fair market value)로 평가함
- ◆ 순자산가치가 13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고액부동산 보유자를 과세대상으로 함
 -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 합산 총액에 대해 과세함
- ◆ 세율은 6단계 초과누진세 구조임
 - 80만유로까지는 0%, 130만유로까지 0.5%, 257만유로까지 0.7%, 500만유로까지 1%, 1,000만유로까지 1.25%, 1,000만유로 초과는 1.5%의 세율을 적용함

03 주요국의 보유세

라. 프랑스

2) 부동산부유세

- ◆ 순자산가치가 130만 이상 140만 유로 이하인 경우 일정 세액(최대 1,250 유로)을 감면하는 특례를 둠
 - 감면세액은 {17,500유로-(1.25%×순자산가치)}
- ◆ 소유자가 실거주하는 주된 주택(résidence principale)은 부동산부유세 과세표준을 공정가치의 70%로 하는 특례를 둠
 - 주된 주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시 기재하는 주소를 의미하며 한 해에 거주지가 2곳 이상인 경우 납세자는 주된 주택을 선택해서 지정해야 함
 - 한 가족이 여러 거주지를 소유할 경우, 오직 한 곳의 주택에만 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 납부액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어 소득세와 부동산부유세의 총 세부담은 납세자의 전년도 총소득의 75%를 한도로 함

03 주요국의 보유세

마. 일본

- ◆ 일본은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감특례를 적용함

1) 고정자산세

- ◆ 고정자산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임
 -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상각자산이나 각각 과세표준금액이 30만엔, 20만엔, 150만엔에 미달할 시 고정자산세를 비과세함
 -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고정자산세평가액이지만 주택용지와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경감특례가 적용됨
 - 토지와 건물의 가격은 각 시정촌의 고정자산 평가원이 3년마다 평가함
 - 표준세율은 1.4%임
 -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경감하고,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경감함

03 주요국의 보유세

마. 일본

1) 고정자산세

<일본의 고정자산세 경감특례>

대상		경감내용
주택 용지 ¹⁾	소규모주택용지 (200㎡ 이하부분)	과세표준 × 1/6
	일반주택용지 (200㎡ 초과부분, 단 건물 바닥면적의 10배 초과 부분까지를 상한으로 함)	과세표준 × 1/3
신축 주택 ²⁾	바닥면적 120㎡까지의 부분 - 3층 이상의 내화구조, 준내화구조 - 상기 외 일반주택	고정자산세 1/2 경감 - 신축 후 5년간 경감 - 신축 후 3년간 경감

주: 1) 점포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이 1/2 이상인 경우 부지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함. 해당 부지에 주택이 존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면적으로 판정함

2)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축된 경우에 한함

자료: 三井不動産リアルティ, <https://www.mf-realty.jp/tebiki/mtebiki/09.html>,

03 주요국의 보유세

마. 일본

2) 도시계획세

- ◆ 도시계획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고정자산세와 일괄하여 납부함
 - 세율은 최고한도인 0.3% 이내의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함
 - 단 과세표준이 토지 30만엔, 건물 20만엔에 미달할 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함
 -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고정자산세평가액이나 주거용 부동산에 경감특례를 적용함
 - 소규모주택용지(200㎡ 이하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1/3로 하고 일반주택용지(200㎡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2/3로 함

04 마치며

- ◆ 지금까지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체계와 현황을 살펴봄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04 마치며

- ◆ 조사대상국은 부동산 양도단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거나 별도로 과세하는 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 미국은 양도소득을 자산보유기간 1년 기준으로 구분하여 단기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 과세, 장기양도소득은 경상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
 - 영국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며,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기본세율과 고세율 적용
 - 독일은 10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하며,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는 연간 600유로임
 - 프랑스는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하는데, 개인단위가 아닌 가족단위로 부동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재조정함
 - 일본은 양도소득을 보유기간 5년을 기준으로 장기양도소득과 단기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함

04 마치며

- ◆ 조사대상국은 적격 주거용 주택과 장기보유 시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미국은 적격 주거용 주택에 대하여 부부합산 최대 50만달러(독신 25만달러)를 소득공제를 허용하며, 장기양도소득에 대한 저율과세를 적용함
 - 영국은 적격 주거주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며, 장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지원세제는 없고 £12,300의 연간공제금액이 있음
 - 독일은 (1) 취득·완공 이후 양도 시까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거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직전 2개 연도 동안 주거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와 (2) 취득 후 10년 경과 시 비과세함
 - 프랑스는 주된 주택 및 양도가액 15,000유로 이하인 부동산 및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함
 - 일본은 실거주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공제를 허용하며, 장기보유 시 경감세율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04 마치며

- ◆ 조사대상국의 보유세 체계는 다음과 같음
 - 미국은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주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노인 및 장애인 등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적용하고 있음
 - 영국은 카운슬세, 법인소유 부동산 연간세, 비주거용 레이트 등의 보유세를 부과함
 - 카운슬세는 과세대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등급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을 실시함
 - 독일은 보유목적에 따라 차등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며, 베를린에서는 2주택 보유 시 순임대료의 15%를 2주택세로 부과함
 - 프랑스는 부동산세와 13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고가부동산에 대하여 0.5~1.5%의 세율로 부동산부유세를 부과함
 - 소유주가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부유세의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일본은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감특례를 적용함



04 마치며

- ◆ 각국의 세제는 개별 국가의 특수한 환경, 다른 제도 등과 연결되어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특정 국가의 특정 세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제·취득세제 및 주택임대소득세제의 정책방향

- 정 지 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정 재 현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및 주택임대소득세제의 정책방향

정지선*·정재현**

1. 서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보유세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조세이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의 강화 및 완화를 반복하여 왔으며,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반복하여 왔다. 즉,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거나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거나 취득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등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¹⁾

특히,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입법을 할 때에는 그 당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때이며,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거나 거주기간을 추가하면 그 당시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때인 것이다. 즉, 약간의 시차는 존재하겠지만,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의 변화만 제대로 분석하면 주택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상황도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변경이 효과적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며, 대부분의 경우 그 효과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 물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에는 보유세제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인상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무분별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논리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지 않은 조치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하에서는 부동산 관련 거래세의 대표적인 세목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중심으로 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과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행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주택임대소득세제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및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세제개편 및 정책방향

부동산 관련 대책은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관련 대책 또한 많을 수 밖에 없었던 점도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중에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문재인 정부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관련 세제개편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의 핵심 기조는 주택의 공공성 강화였다. 즉, 정부의 주택 정책은 경기부양 또는 경기조절의 수단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주택의 경우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²⁾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관련 세제개편은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2018년 시행 개정 내용부터 2022년 시행 개정 내용까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류지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에 관한 규범적 검토 - 부도안 세금의 제재화에 관하여-”,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12, p. 101.

가. 2018년 시행 개정 내용

2018년 시행 양도소득세 개정은 일부 지역의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투기 수요에 대한 주택시장의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비과세 요건의 강화와 중과에 중점을 두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경우 부동산 8·2(2017년) 대책으로 기존 2년 이상 보유(고가주택 제외)하면 비과세하였으나,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조정지역 내의 주택(2017.8.3.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상속주택 특례 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은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종전에는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10%, 4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 12%, 이후 1년 마다 3%p씩 증가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30%를 공제하였다. 2018년 개정을 통하여 3년 이상 4년 미만 6%p부터 시작하여 2%p씩 증가하여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30%를 한도로 하도록 개정하여 연간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였다(201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주택자와 관련한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세율을 가산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중과하도록 하였다(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주택자 또는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6~42%)³⁾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며,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가 총 3개 이상인 자가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6~42%)에 2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 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3)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종전의 40%에서 42%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종전 세율	개정 세율
1,200만원 이하	6%	6%
1,200 ~ 4,600만원	15%	15%
4,600 ~ 8,800만원	24%	24%
8,800 ~ 1억5천만원	35%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8%
3억원 ~ 5억원	38%	40%
5억원 초과	40%	42%

관계없이 50%(조합권입주권 제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하였다.

취득가액과 관련된 개정으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건물을 신축하여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필요경비와 관련된 개정으로는 매매계약서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소송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원양성화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증빙요건을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보완하였다(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1년간 1억원이고, 5년간 2억원(8년 자경 등의 경우 3억원)이었다. 이 중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3억원의 한도 규정을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모두 2억원으로 일원화하였다. 농업인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을 위해 어업용 토지와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였다.

소득세법상 임대소득과 관련한 개정으로는 지역권과 지상권 설정소득의 수입시기를 자산의 임대소득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지역권과 지상권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도 부동산 임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으로 규정하였다.

취득세와 관련한 개정으로는 주로 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주택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이 부담부증여로 취득시 부담분에 대한 적용세율이 불명확하였던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특수관계인간 부담부증여 거래는 무상거래 세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시 특례세율(0.3%)은 규정되어 있었으나 합유물 분할에 대한 특례세율은 규정이 없었다. 합유물의 분할에 대해서도 공유물 분할에 따른 특례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2018년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2018년 시행 주요 개정 내용4)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신설 -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신설 -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신설 - 공유물 양도시 납세의무자 명확화 -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의 증빙요건 합리화 -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등 연장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
임대소득(소득세법)	취득세(지방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 규정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인간 부담부증여 취득시 적용세율 명확화 - 합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신설

나. 2019년 시행 개정 내용

2019년 시행 관련 양도소득세 개정은 주로 투기 수요로 인한 주택시장의 과열을 차단하고 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초점을 두었다. 2019년 시행 양도소득세의 개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에 대한 보완 정책과 실수요자에 대한 중과세를 배제하는 개정 위주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경우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보도록 하였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세대로 보아 과세를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하여 보유기간 요건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던 것을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였다(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를 통하여 중증질환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강화하였다(2019.2.1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귀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요건을 합리화 하여 고가주택 판정시점을 취득당시로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225호, 2017.12.1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637호, 2018.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5227호, 2017.12.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636호, 2018.2.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335호, 2017.12.30.).

명확하게 하고,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이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지의 소유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2019.2.1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한 개정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의해 최대 공제율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지만,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2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공제율30%)를 적용받게 된다(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주택자와 관련한 조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의 허용기간도 기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에서 2년 이내로 기간이 단축되었다(2018.1.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9·13(2018년)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로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중과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여 중과세 단서를 신설하였다(2018.10.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8년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5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는데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였다(2018.8.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도소득세 특례와 중과 배제 적용시 임대료를 연 증가율 5% 이하로 하도록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이 추가 되었다(2019.2.12.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되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초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평생 1번만 비과세하도록 하였으며, 거주주택은 '보유한 기간' 중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되도록 요건을 추가하였다(2019.2.12.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 대해 가액기준을 추가하여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려고 하였다(2018.10.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소득세 개정으로는 주로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등록을 활성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임대주택사업 등록 활성화를 위한 개정으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미등록자와 차등을 두어 필요경비율 60%(미등록자 50%), 공제금액 400만원(미등록자 200만원)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액감면(4년 임대시 30%, 8년 임대시 75%)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분리과

세 선택시에도 적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임대소득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으로 간주임대로 과세대상 확대하여 소형주택 면적과 가액기준을 인하하였다. 또한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미등록시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취득세 관련 주요 개정으로 개인간 거래시 취득가격의 범위에 중개보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과세표준 산정시 중개보수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상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외에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익복지주택의 경우 일반세율(4%)가 아닌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1~3%)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세율 대상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2019년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을 표로 정리하며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2019년 시행 주요 개정 내용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신설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등록임대주택 중과 - 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시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 특례 신설 -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요건 추가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약조건 위반시 감면세액 조정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신설
임대소득(소득세법)	취득세(지방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른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 임대소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신설 -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 -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 - 주택임대소득 관련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재산 상속등기 후 재분할시 취득시기 명확화 - 가정어린이집 등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 개인간 거래시 취득가격의 범위 명확화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104호, 2018.12.3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6009호, 2018.12.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527호, 2019.2.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194호, 2018.12.3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9437호, 2018.12.31.).

다. 2020년 시행 개정 내용

2020년 시행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개정에서는 부동산 12·16(2019년) 대책에 따라 관련 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비과세 제도를 개선하여 실수요자 위주로 적용을 받도록 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경우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세분화 하여 조정하였다. 도시지역(배율 5배)과 도시지역 밖(배율 10배)으로 구분하던 것을 세분화하여 도시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배율 3배), 녹지지역(배율 5배), 수도권 밖(배율 5배)으로 세분하여 부수토지의 범위로 인정하도록 하였다(202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전입요건을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하였다(2020.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9억원 초과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으나 연면적과 관련없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2년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하게 하였다.

다주택자와 관련된 조치로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2019.12.17.부터 2020.6.30.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판정시 수입금액 기준을 추가하였다.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농지의 경작 기간에 제외하여 자경농지의 지원취지에 맞게 감면 요건을 조정하였다.

임대소득과 관련한 소득세 개정으로 고액 임대소득을 얻는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임대소득 수입금액 연 600만원 이상,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수의 계산방법을 개편하였다. 다만, 부부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계산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취득세와 관련된 주요 개정으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세율(2%)을 1~3%의 세율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을 배제하고 4%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으로부터 5년 내 취득하는 중과세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신탁계산을 포함하여 중과세 되는 범위를 합리화하였다.

이러한 2021년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2020년 시행 주요 개정 내용⁶⁾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기한 단축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의제 명확화 -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감면을 인상
임대소득(소득세법)	취득세(지방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과세표준에 조정비용 포함 - 무신고 및 허위신고시 과세표준 개선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 신탁재산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범위 합리화 - 1세대 4주택 판단기준 신설

라. 2021년 시행 개정 내용

2021년 시행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개정에서는 다주택자와 단기양도분에 대한 중과와 실소유자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정책기조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의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상향되었다. 종전 과세표준 5억원 초과한 경우 최고 42%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2%, 10억원 초과의 경우 45%로 상향되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 관련된 조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한 금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834호, 201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395호, 2020. 2.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6835호, 2019.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 30390호, 2020.2.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액을 합산하여 공제하도록 하여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하였다.

다주택자와 관련된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세율을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p, 1세대 3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에 30%p를 가산하여 기존보다 10%p 세율을 인상하였다(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또한 주택 수 산정시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도 포함하여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을 맞추려고 하였다(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2년 미만의 단기 양도주택 등은 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1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70%, 2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60%의 세율을 적용한다(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외에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주택 등 비합산) 적용시 대지면적 660m² 이내의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도록 하여 농어촌주택의 취득을 지원하였다.

임대소득과 관련한 소득세 개편으로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의무임대기간을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10년(기존 4년)으로 연장하고 분리과세와 소형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기존 8년)으로 연장하였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중간예납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사후관리 적용 배제 규정도 신설되어 의무임대기간 중 자진·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였다.

취득세와 관련한 개정으로는 주로 중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고급주택 중과기준을 시가표준액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기준을 조정하였다. 또한 건축물 가액 기준을 폐지하여 공시가격 기준인 9억원 초과로 일원화하였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 범위에 따라 중과를 제외하는 멸실주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러한 2021년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2021년 시행 주요 개정 내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시 거주기간 요건 추가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정비 - 주택과 분양권 소유시 1세대1주택 특례 신설 -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연장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예외 사유 추가 -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제외 주택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제도 정비 및 조문 명확화 관련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반영 및 일몰 단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 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 추가
임대소득(소득세법)	취득세(지방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사후관리 의무임대기간 연장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중간예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피스텔에 대한 별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마련 - 고급주택 중과세 요건 조정 - 주택건설 목적 멸실예정 주택 취득 중과제외 기준 신설

마. 2022년 시행 개정 내용

2022년 시행 양도소득세는 대대적인 개편보다는 기존 제도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 관련된 조치로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비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실지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고가주택 양도차익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기준금액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하였다(2021.1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과세형평을 위해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과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요건에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였다(2022.2.15. 이후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77호, 2020.8.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757호, 2020.12.2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1083호, 2020.10.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11442호, 2021.2.1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6835호, 2019.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390호, 2020.2.1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1343호, 2020. 12. 31.).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터 적용).

이외의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으로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을 막기 위하여 주말·체험 영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하는 과세특례가 신설되었다.

임대소득과 관련한 소득세 개정으로는 서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였다. 3주택 이상자가 받는 보증금 등에 대하여 소형주택은 주택수와 간주임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2년 연장(2023.12.31.까지)하도록 하였다.

취득세와 관련한 개정으로는 실질가치 반영을 위한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이 주를 이루었다. 취득원인별로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과세표의 기준을 무상, 유상, 원시, 과세특례, 간주취득의 순으로 구분하여 재편하였다. 또한 과세표준을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은 실제거래가액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고,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2023.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이러한 2022년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2022년 시행 주요 개정 내용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 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주말·체험 영농 농지 제외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임대소득(소득세법)	취득세(지방세법)
- 소형주택 간주임대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선 - 중과 제외 대상 확대(대도시 공공전세 주거용 오피스텔, 리모델링조합의 사업목적주택,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77호, 2020.8.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757호, 2020.12.2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1083호, 2020.10.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1144호, 2021.2.1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6835호, 2019.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390호, 2020.2.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2. 윤석열 정부의 양도소득세 관련 기본방향

윤석열 정부 출범 전 후보시기에 발표했던 부동산 관련 대선공약은 주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공급의 확대에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 세제와 관련된 주된 공약으로 다주택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 출범 전 대선공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재정비하여 임대차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였다. 공약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 등으로 인한 임차 가구의 주거 불안정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임대차시장의 정상화 차원에서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둘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하였다. 세 부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후 부동산세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셋째, 취득세에 대한 세율 구조를 정비하겠다고 하였다.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위해 현행 1~3%의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구간을 단순화하며,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생애최초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를 완화하겠다고 하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5.10.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하고,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양도기한 등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이다.

셋째,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III.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및 임대소득세제의 정책방향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가.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양도소득세는 태생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신설된 세목이다. 즉, 양도소득세의 원형은 1967년 11월 29일에 제정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양도에 대해 부과된 부동산투기억제세이다. 이러한 세금의 도입 배경은 19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시행에 따른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현상이고 직접적으로는 강남 땅 투기 열풍이었다.⁹⁾ 즉, 1960년대 초반 일부 지역의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투기억제세라는 명칭으로 개인과 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5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였으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건물면적의 10배 내에 있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태생적으로 정책적인 목적으로 신설된 세목이기는 하지만,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너무 빈번하게 개정되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주택의 경기에 따라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였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양도소득세의 복잡화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과열 또는 침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반복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그 어떠한 세목보다 복잡하게 되었다.

양도소득세가 복잡하여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들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9)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제사」 제2편 제3권, 2012, p. 129.

첫째,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다. 즉, 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미납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너무 복잡해서 납세자도 모르는 사이에 조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즉, 너무 빈번하게 바뀌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권을 등에 업은 이해집단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예외조항과 감면요건이 붙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올 때마다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전문가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난수표’가 됐다. 주택 수·위치·면적·취득시점·거주현황 등에 따라 양도세 규모가 수억원까지 달라지다 보니 양도세 관련 상담을 거절하는 ‘양포¹⁰⁾ 세무사’마저 나올 정도다.¹¹⁾

둘째,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가 또는 변호사 등이 세무상담을 할 때에 조세법전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¹²⁾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또한, 2020년 7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지만, 그 시행 시기는 2021년 6월 1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그 법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개정내용을 통하여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셋째, 2019년에 1,763건에 불과하였던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관련 서면질의가 2020년에는 약 2배에 가까운 3,243건에 달했다. 또한, 2021년 6월까지의 2,863건으로 2019년 1년 기준보다 많았다.¹³⁾ 이와 같이 국세청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서면질의가 많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관련 전반적인 세법 규정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그에 대한 규제로서 세제개편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지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조세법, 특히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은 너무 자주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법의 내용이 복잡할수록 비효율과 불공평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즉, 제도가 단순한 경우에는 누구나 그 내용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각종 요건에 따라서 감면의 적용 여부나 세율의 적용이 달라지면 조세법을 알수록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 모르면 더 납부하게

10) 양도소득세 포기를 줄인 말이다.

11) 한국경제신문 2020.1.13. 기사 참조.

1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ometax.go.kr)

13) 이데일리 2021.10.26. 기사 참조.

되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만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부연하면, 조세제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조세회피의 소지는 커지게 되며, 각종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세제도는 되도록 단순화해서 불공평과 비효율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2) 양도소득세의 회피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높고, 그 구조가 복잡하게 될 수록 납세자들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하게 된다. 또한, 세율이 높은 만큼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탈세의 동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¹⁴⁾

이하에서는 고율로 과세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대표적인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인을 통한 매수 및 매도

2019년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수한 주택이 40,000여호에 달하고, 새로 창업한 부동산 기업의 경우도 2018년에 비하여 40% 이상 증가하였다. 즉, 2020년 3월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9년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수한 주택은 38,959호였으며,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주택은 31,527호였다. 법인의 개인 소유 주택의 구입이 판매를 최초로 넘어선 것으로서,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주택이 7,432호 적었다. 그리고 2019년 창업한 부동산 기업은 14,754개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¹⁵⁾

주택의 경우는 주로 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토지 또는 상가 등 다른 부동산과 달리 개인의 매수가 법인의 매수보다 많을 수 밖에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2019년에 처음으로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이 직접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보다 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낮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절세를 위한 법인을 통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집값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나타난 ‘풍선효과’가 집중된 경기도의 수원과 용인의 경우 집값 상승의 주요한 역할을 법인이 했다는 언론의 보

14) 탈세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에 대하여는 (하노백·알로이스 프린츠, 『세금전쟁』, 재승출판, 2016.)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15)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

도도 있다. 2020년 1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주택은 284호인데 반하여, 개인에게 판매한 주택은 109호에 불과했다. 또한, 용인시의 경우에도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수한 주택이 매도한 주택보다 2배 가량 많은 141호였다.¹⁶⁾

2) 가족간 증여의 증가

문재인 정부에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데 이어 2020년부터는 공시가격까지 대폭 올리면서 서울의 다주택 보유자 중에서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보유세가 부담되어 아파트를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고, 양도를 한다고 하여도 이후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선 전세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다. 부담부 증여는 아파트 소유권을 남에게 넘기지 않으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 절세 전략으로 통한다. 부담부 증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핵심 원인은 세목의 분산이다. 전세 보증금은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과세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과세 항목을 분산하면 각각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 세금 총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담부 증여의 기저에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¹⁷⁾

(3) 입법취지와 정반대의 결과 초래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과세를 강화하는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이고, 반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완화하는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였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¹⁸⁾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7월 10일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겠다고 예고하였으며, 실제로 2021년 6월 1일부터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중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과세제도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택의 매각을 유도하여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이러한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2020년 7월 10일 대책 이후에 오히려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매물의

16) 한국일보 2020.3.3. 기사 참조.

17) 한국일보, 2020.3.8. 기사 및 조선일보, 2010.4.10. 기사 참조.

18) 이러한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감소로 인하여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였으며,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중과세율의 시행으로 인하여 매물의 감소는 더 심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집값의 불안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편,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정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조세평등주의의 침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재산증식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이외 지역의 다주택자와 비교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배제 등 중과세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¹⁹⁾ 먼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는 달리 해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즉,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해제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주택가격의 하락률 등 해제의 정량적인 요건을 규정이 없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이후에 해제가 어려우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목적에 비추어 다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의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자보다 과도한 세부담을 지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중에서 특히,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자산과 비교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며, 종합소득에 비하여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중과세하는 것도 조세평등주의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5) 과도한 중과세

현재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제도의 연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6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소득

19) 류지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규범적 검토 - 부동산 세금의 제재화에 관하여-”,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12, pp. 128-129.

세법이 개정되면서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5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²⁰⁾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은 2014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폐지되었지만, 2017년 8.2 대책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및 시행되면서 4년만에 부활하였다.²¹⁾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첫째,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²²⁾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조세가 아니라 제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중과세 내용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이 조세로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의 세제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자로서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보유한 개인들을 사실상 투기자로 정의한 문재인 정부의 비판의식에 기초하여 설계된 것이다.²³⁾ 부연하면,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등은 조세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보아 적절한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²⁴⁾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

20) 이와 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이 도입된 이유는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주택의 양도를 유도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21) 류지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규범적 검토 - 부동산 세금의 제재화에 관하여-”,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12, pp. 112-113.

2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20%(③ 및 ④의 경우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20%(③ 및 ④의 경우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①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③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④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3) 류지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규범적 검토 - 부동산 세금의 제재화에 관하여-”,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12, p. 116.

24)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택 이상의 자들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도 배제하고 있다. 즉, 최고세율이 75%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²⁵⁾ 이에 더하여 지방소득세 7.5%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몰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즉,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최고 82.5%²⁶⁾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세율구조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미등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70%인데,²⁷⁾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미등기 양도에 대하여 7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탈세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실질은 몰수에 가까운 제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탈세의 경우와 동일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의 정책방향

현재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조세의 기본원리에 맞게 예외적인 규정은 되도록 폐지하고,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하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가주택 기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있어서 보유기간의 타당성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고가주택 기준의 타당성 여부

고가주택의 기준은 2002년까지는 고급주택을 기준으로 하였다. 즉,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45평 이상으로 6억원 초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지 150평 이상으로 6억원 초과, 20평 이상의 수영장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에 상관 없이 고급주택으로 보았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면적 구분 없이 매매가 6억원 초과로 단일화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인 2008년 10월에 9억원으로 높여 현실화하였으며, 14년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다가, 2021년 12월에 12억원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재의 고가주택 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즉, 2021년까지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었던 9억원은 이명박 정부때인 2008년

25)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26) 소득세 최고세율 75%에 지방소득세 세율 7.5%를 더하면 82.5%가 되는 것이다.

27)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

에 만들어졌는데, 이 당시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8,000만원에 불과하였다.²⁸⁾ 그러나, 현재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원을 넘었으며,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22년 4월 기준으로 12억 7722만원에 달하고 있다.²⁹⁾

이와 같이 주택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세부담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이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에는 투기적인 수요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이유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인 만큼, 기준 금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어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가 문제인데, 중위가격과 평균 매매가격을 참고하여 최소한 15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있어서의 보유기간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³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는 보유기간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³¹⁾ 이러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보유기간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의 개선방안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조성 및 집적된 소득이 매매 등과 같은 행위에 따라 일시에 실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해당 소득이 실현된 연도에 일시에 과세하기 때문에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특성상 매년 단위로 발생 또는 증가하는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보다는

28) 한국경제신문, 2020.3.20.자 기사 참조.

29) 조선일보, 2022.5.19.자 기사 참조.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31) 대법원 1993.1.19.선고, 92누12988 판결.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³²⁾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장기간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의 특성상 물가상승분에 해당하는 명목이득을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즉,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취득일 이후에 인플레이션으로 늘어난 명목이득을 과세에서 제외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³³⁾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중에서 토지 또는 건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하며, 최소 6%에서 최고 30%를 적용하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최소 12%에서 최고 4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³⁴⁾

이러한 현재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첫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늘어난 명목이득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유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즉,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누진적 조세체계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연동하는 것은 징벌적 성격을 과도하게 높이는 조치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가 일정 부분 조세유대조치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즉, 장기보유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상 상대적으로 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재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거주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제도만 복잡하게 할 뿐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즉, 1세대 1주택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유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률을 달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현재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고 있는데, 높게 적용할 근거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고가주택 기준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그 기준금액 초과액에

32) 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22, p. 583.

33) 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22, p. 721.

3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하여 추가적으로 우대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넷째,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즉,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명목이득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거주기간은 제외하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1세대 1주택자라고 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고가주택 기준 금액까지는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중의 혜택에 해당하여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4)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개선방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보유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양도소득세의 부담 또한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앞의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에서 살펴보았지만, 2021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양도차익의 50%는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의 자들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최고세율은 7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는 규제 또는 제재의 범위를 넘어서 몰수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³⁵⁾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세율이 적정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헌법상 재산권 보호와 세금부과 문제를 이론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하면서 기본적으로 세금부과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어느 정도를 적정한 범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4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구체적인 상한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지점에서 재산권 보호와 과

35)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조원용, “사유재산권과 조세의 한계에 관한 실증적 일고찰 : 정책적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22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22.3. 및 조원용, “고가주택·다주택 중과세를 통한 주택시장안정의 허구성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공법연구』 제50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21.12.)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세권의 행사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를 함에 있어서 독일 세법상의 반액과세의 원칙³⁶⁾은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다.³⁷⁾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단기보유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중에서 50%를 초과하는 세율구조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취득세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에 있어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였지만, 취득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목적으로의 활용이 적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취득세의 경우에도 정책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이루어 지면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의 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이 신설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취득세 중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취득세 세율의 인하 여부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에 있어서는 취득단계와 보유단계 및 양도단계의 모든 조세에 있어서 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이 취득단계와 보유단계 및 양도단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에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거래세에 있어서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첫째, 조세제도에 있어서 거래세라 함은 취득세, 증권거래세 또는 등록면허세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거래세라 함은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거래세인 취득세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즉, 부동산의 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거래

36) 독일 세법상 반액과세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동식, “독일 세법상 소위 반액과세원칙에 대한 검토”, 『조세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09.4)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37) 이동식, “독일 세법상 소위 반액과세원칙에 대한 검토”, 『조세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09.4, p. 42.

세라 함은 양도소득세이며, 취득세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둘째, 일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세인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³⁸⁾ 그러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는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거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주택의 취득자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도자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연하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에 있어서 중과세율을 폐지하여, 조세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취득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재산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세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목의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현재에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더욱 열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적용의 개선방안

(1)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 적용의 개선방안

현재 취득세의 세율 적용에 있어서 주택의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따라서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3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⁹⁾ 즉,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세율 적용에 있어서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다른 과세대상과는 달리 유독 주택에 대해서만 누진세율구조를 취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⁴⁰⁾

첫째,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된 이유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즉, 2013년 중앙정부가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면서 지금과 같은 세율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면, 그 목적을 달성한 지금은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주택의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래량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뿐이다.

셋째, 현재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해서는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율적용의 경계에 있는 가격에서는 왜곡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8) 머니투데이, 2020.3.4. 기사 등 참조.

39) 지방세법 제11조 제2호, 제8호.

40)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지선·서명자, “취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39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21.6)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넷째, 주택에 있어서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3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따라서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3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¹⁾ 이러한 지방세법상 규정 때문에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무상거래를 유상거래로 위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실질이 무상거래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에 따라 심정적으로는 무상거래인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상거래인 매매로 볼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⁴²⁾

따라서, 주택의 유상거래의 경우에도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현재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구조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 임시로 설계한 제도로서, 과거와 같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4%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취득세 전체적인 세율체계와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의도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주택에 대한 증과세율 적용의 개선방안

현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41) 지방세법 제11조 제2호, 제8호.

42)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또는 제3자로부터 취득하면서 매도자가 입주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적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취득과는 상이한 형태의 거래로 그 특성상 임대보증금 부분은 매매 당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고 차후 임대차관계가 종료시 관련 금전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여 거래 당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유상거래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위 법 조문의 취지에 따라 현행 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제3자간 거래에서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거래 형태를 감안하여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적실성 여부,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 여부, 제세공과금 신고의 적정성 여부, 임대보증금 반환 가능한 소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쟁점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금액은 지급사실이 금융거래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과 같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같은 날 체결하면서 청구인들이 갑에게 지급할 850,000,000원의 매매대금에서 임차인 갑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쟁점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고 나머지 금액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의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근로소득 내역은 147,287,110원 내지 159,964,730원으로 나타나는 점, 갑은 2017.12.15.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2017.12.19.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아파트 매도자 갑은 쟁점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84,201,000원)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85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830,000,000원을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쟁점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8지0935, 2018.12.5.).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하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⁴³⁾

그러나, 이와 같은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그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첫째, 상가 또는 토지 등 다른 과세대상과는 달리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현재와 같은 세율구조는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세부담의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6억원짜리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세율이 12%가 적용되는데, 유상거래를 할 경우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이와 같이 12배의 세율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만, 유상거래로 위장하는 사례도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납세의무자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전국에서 법인이 취득한 주택 중에서 50% 이상이 공시자가 1억원 미만인 주택이었다. 일반적으로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입지조건이 좋지 않거나,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었지만, 이례적으로 수요가 몰린 것이다. 즉,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전국에서 법인이 매입한 주택 46,858가구 중에서 54.7%인 25,612가구가 실거래가 150,000,000원 이하였다. 시세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8.4%인 점을 감안하면 150,000,000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원 안팎인 것이다. 부연하면,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법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입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입한 이유는 2020년 7·10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종전의 1~3%에서 최대 12%까지 높였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세율도 기존의 1%로 유지하였기 때문이다.⁴⁴⁾

따라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3. 주택임대소득세제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주택임대소득세제의 가장 핵심 정책은 등록임대제도이다. 민간임대 시장에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

43) 지방세법 제13조의 2.

44) 조선일보, 2021.10.21.자 기사 참조.

하는 제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인책을 제시하여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였다. 정권 초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기본공제의 적용 등 임대사업자에게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인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못하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유인책이라는 비판 때문이다. 2020년 7·10 대책에서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기간이 종료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기로 하였으며, 공적인 의무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하에서는 주택임대소득세제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주택임대소득세제의 문제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보장해주는 대신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신 임대료 증액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월세 임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등록 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 부여와 이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있었던 2020년 7·10 대책에서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일부 임대 유형은 폐지하여 자동 말소시키기로 하였으며,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도 강화하였다.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유기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의 대상은 줄이면서 공적 의무는 강화하여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줄이고 의무는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사업자들은 등록말소와 함께 세제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큰 훼손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주택임대소득세제의 개선방안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으나 전월세 임대 시장의 안정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실제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제도의 유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간 임대의 활성화가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조치가 폐지될 수 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의 필요성은 낮아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법의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법 개정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수정하기 전이라도 주택임대사업자에 중과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통하여 그 효과를 먼저 부여할 수도 있다.

기존의 주택임대소득세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에 따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도 존재하기에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택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형 아파트나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특히 제도의 운영에서 공적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세제혜택이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IV. 요약 및 결론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거의 모든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관련 정책을 쏟아내었으며, 그러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는 거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가격이 폭등하였는데, 과거, 특히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로 조세제도를 이용하였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28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져 나왔는데, 대출을 억제하고, 일관된 기준 없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으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였고,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최대 8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매매가격 전세가격 및 월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는 취득단계와 보유단계 및 양도단계 모두 정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할 것이다. 취득단계에서는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이고, 취득세도 최고세율이 12%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보유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이 6%이며, 양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75%이다.

한편, 조세제도는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개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법에 비하여 자주 개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납세자들 뿐만 아니라 조세 전문가들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예외에 예외를 추가하는 식으로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법, 특히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너무 빈번하게 개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고 하여 국가적으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즉,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 측면에서는 양도소득세는 단순화 할 필요가 있으며, 중과세율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취득 단계의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는 현재의 세율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김낙희, 『세금의 모든 것』, 21세기북스, 2019.
- 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22.
- 김태경,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9.4.
- 류지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규범적 검토 - 부동산 세금의 제재화에 관하여-”,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12.
- 윤영훈,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5.
- 이동식, “조세의 유도적 기능의 허용과 한계”, 『조세법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13.11.
- 이창무, “다주택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그 해법”, 『주택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주택학회, 2010.2.
- 장지영, “부동산 세제의 위헌요소에 관한 연구 - 2020년 주택 관련 개정 세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2.
- 정지선·서명자, “취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39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21.6.
- 정희근, “현 정부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9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8.
- 조원용, “사유재산권과 조세의 한계에 관한 실증적 일고찰 : 정책적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22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22.3.
- 조원용, “고가주택·다주택 중과세를 통한 주택시장안정의 허구성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공법연구』 제50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21.12.
- 하노백·알로이스 프린츠, 『세금전쟁』, 재승출판, 2016.
- 한국세무사회, 『2022년 조세법전』, 2022.
-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제사』 제2편 제3권, 2012.

부동산보유세제의 정책방향

- 이 동 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 민 수 (대구시청 법무담당관실, 법학박사)



부동산보유세제의 향후 정책방향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수, 법학박사, 대구광역시 납세지보호관

[윤석열 정부 출범]尹정부,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제도 전면 대수술

출처: 내통국가 | © 승인 2022.05.10 15:51 | 0 댓글 0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공과 한시 유예
세금부담 높아진 종부세도 가뭄-홍수기론 재산세와 통합 검토
'정책 기조는 공평적-법제화가 필요할 경우 합치가 필요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차 대통령 취임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

❖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부동산보유세분야도 크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부동산 보유세의 의의

- ❖ 부동산보유세
 - ‘부동산 보유사실’ 을 담세력으로 보아 납세자에게 과세하는 세금
 - 부동산보유 자체에 대한 과세 / 내재적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
- ❖ 부동산보유세의 종류
 - 지방세인 재산세
 -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세의 의의

- ❖ 부동산보유세의 기능
 - 재원조달기능
 - 부동산시장 조절기능
 - 소득세의 보완적 기능
 - 부의 재분배기능
- ❖ 부동산 보유세의 이론적 정당화
 - 응익과세원칙
 - 응능과세원칙

부동산 보유세와 헌법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 헌법 제14조 - 거주이전의 자유
- ❖ 헌법 제23조 - 재산권보장
- ❖ 헌법 제34조 제1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재2008.11. 13. 선고 2006헌바112결정-1세대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부재
-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헌재2008.11. 13. 선고 2006헌바112결정-세대별합산과세제도

부동산 보유세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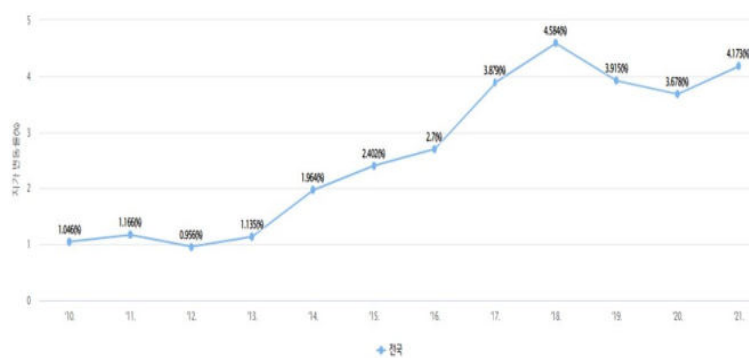
- ❖ 해방이후 ~1961
국세인 지세, 광세 지방세인 가옥세, 임야세, 면세지특별세
- ❖ 1961. 12. 8. 지방세법 전면개정
중전 국세 및 지방세로 분산되어 있던 부동산 보유세 세목을 시군 단위의 “재산세”로 흡수통합
- ❖ 1973. 3. 12. 지방세법개정
사치성 부동산, 법인의 법업무용토지, 대도시내 신설공장에 대한 중과세
- ❖ 1986. 12. 31. 지방세법개정
토지과다보유세(공한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전국적으로 인별합산)
- ❖ 1989. 6. 16. 지방세법 개정
토지과다보유세폐지, 종토세도입(종합/별도/분리). 토지를 재산세과세대상에서 분리하고 전국합산
- ❖ 2005년 부동산보유세개편
통합재산세도입과(토지의 경우 과세권자별 합산) 종합부동산세 신설
- ❖ 2008년 헌법재판소의 중부세법 헌법불합치판결 및 관련 법개정
헌재 2008.11.13. 선고 2006헌바11결정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표 참조: 공감 (<https://gonggam.korea.kr/main.do>)

연도별 지가변동율



* 표 참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 출범후 부동산세제의 변화

- 2017년: **6.19 대책**-과열지역 선별적 대응을 위한 조정대상지역 선정, LTV·DTI 강화
8.2 대책-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지정. 다주택자양도세강화, 1세대1주택비과세시 거주기간추가
9.5 대책-투기과열지구추가지정 및 집중모니터링지역설정
10.24 대책-가계부채종합대책, LTV·DTI기준변경, DSR도입, 중도금대출한도설정
11.29 대책-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확대, 수요자맞춤형지원
12.13 대책-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 등록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강화
- 2018년: **2.21 대책**-전문성있는 공공기관이 재건축안전진단에 관여하게 함
3.27 대책-공적재원을 투입하여 도심과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실시
6.4 대책-부실시공업자선문양제한
6.13. 7.5 대책-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택공급방안
8.27 대책-수도권 공공택지추가개발, 투기지역등 지정
9.13 대책-고가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중부세 세율인상 및 대출규제
9.21 대책-수도권주택공급확대(3기 신도시계획) 및 신혼희망타운 조기공급
- 2019년 :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 인상
5. 7-3기 신도시대상지역 2차발표(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12.16 대책-대출규제강화, 중부세 세율강화, 공시가격현실화, 양도세장기보유공제강화
- 2020년 : **6. 17 대책**-갭투자규제, 법인보유부동산에 대한 중부세세율강화, 강남토지거래허가제
4.15. 7.10 대책-중부세세율인상, 법인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미적용, 다주택자등양도세강화
7.29-임대차3법 국회통과
8.4 대책-재개발재건축용적률완화, 공공재개발등시행, 태릉선수촌등에 공급대책, 공공임대아파트확대
- 2021년 : 부동산공시가격인상 및 농지에 대한 과세강화, LH사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현황 1

1. 과세권자

시군구. 서울시는 공동세

2. 과세대상

토지(종합/별도/분리), 건축물, 주택

3. 납세의무자

-원칙: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예외: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예,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4. 과세표준

토지 및 건축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의 70%

주택: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의 60%

5. 세율

토지: 종합-0.2%/0.3%/0.5%, 별도-0.2%/0.3%/0.4%, 분리-용도에 따른 차등세율

건축물: 골프장용 건축물 4% 등

주택: 별장-4%, 그 외 주택-0.1%/0.15%/0.25%/0.4%, 공시가격9억원이하 1세대1주택의 경우 각 구간별로 0.5%p 인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현황 II

6. 납부 및 징수

가. 납기

토지-매년 9.16-9.30, 건축물-매년 7.16-7.31, 주택-1/2은 7.16-7.31, 1/2은 9.16-9.30

나. 징수

보통징수의 방법

7. 세부담상한

가. 주택(법인소유 주택은 제외)

-공시가격 3억원이하:직전연도 재산세액의 105%

-공시가격 3억원초과~6억원 이하: 1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 130%

나. 그 외

150%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과세관련 최근 개정내용

1.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2021-2023 한시적)
0.05%(1억 이하)~0.35%(3억초과분). 각 구간별 005%인하.
2.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감면요건강화
장기매입임대기간강화(8년에서 10년으로) 및 가격요건 신설(2020.8.12. 이후)
3.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2021년부터)

재산세과세 통계

[단위: 조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조원	조원	조원	조원	조원	조원	조원
지방세 징수액	61.7	71.0	75.5	80.4	84.3	90.5	102.0
(조세총액 대비, %)	23.1	24.6	23.7	23.3	22.3	23.6	26.9
(GDP대비, %)	4.0	4.3	4.4	4.4	4.5	4.7	5.4
특별시	13.2	15.6	16.5	17.8	19.1	20.5	23.4
광역시	12.1	13.9	14.3	15.3	15.3	16.4	18.6
도	17.5	20.2	21.2	22.5	24.1	26.1	31.2
시	13.2	15.1	16.7	17.8	18.6	19.6	19.7
군	2.2	2.3	2.6	2.8	2.8	2.9	3.5
구	3.5	3.9	4.0	4.2	4.5	4.9	5.6

[단위: 억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보유세 징수액(계)	109,183	115,788	123,834	132,700	143,699	157,196	170,532
- 지방세 중 보유세 비중	17.7	16.3	16.4	16.5	17.0	17.4	16.7
재산세	87,791	92,937	99,299	106,621	115,321	126,771	137,731
종합토지세	0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	9,971	10,789	11,629	12,287	13,470	13,999	14,951
도시계획세	10	1	0	0	0	0	0
지방교육세	11,411	12,061	12,906	13,792	14,908	16,426	17,850

출처: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PageDetail.do?idx_cd=1050)

종합부동산세 과세 현황 I

1. 과세권자

국가. But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전

2. 과세대상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과 토지(분리과세토지는 제외)

3.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가. 주택

국내보유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금액에서 1세대1주택의 경우 11억원, 그 외의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한 금액(납세의무자가 법인이나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인 경우로서 단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공제안함)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을 곱한 금액

나. 토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종합/별도 분리) 금액에서 종합합산의 경우 5억원공제, 별도합산은 80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100%)을 곱한 금액

종합부동산세 과세 현황 II

5. 세율 및 세액

가. 주택

-개인의 경우 주택수에 따른 차등세율. 1세대1주택의 경우 최대 80%까지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를 허용

-법인(「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2주택이하(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의 경우 3%, 3주택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 단일세율

나. 토지

-종합합산: 1%/2%/3%

-별도합산: 0.5%/0.6%/0.7%

다. 재산세와의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세액공제

6. 부과징수방법

부과과세방식+신고납세방식

7. 세부담상한제

가. 주택

일반1,2주택은 150%, 조정2주택과 3주택이상은 300%

나. 토지

150%

종합부동산세과세관련 최근 주요 개정내용

1. 공정시장가액비율(중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4, 2009.2.4. 신설)의 증가

문재인정부이전: 2009년-70%, 2010년 75%, 2011~2017년 80%

문재인정부 출범후: 2018년 80%,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

2.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과 세부담상한선 상향(150%→일반1,2주택 150%, 조정2주택은 300%, 3주택이상은 300%)

3. 법인보유주택에 대해 기본공제(6억)와 세부담상한제 배제하고 세율을 중과세

4.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범위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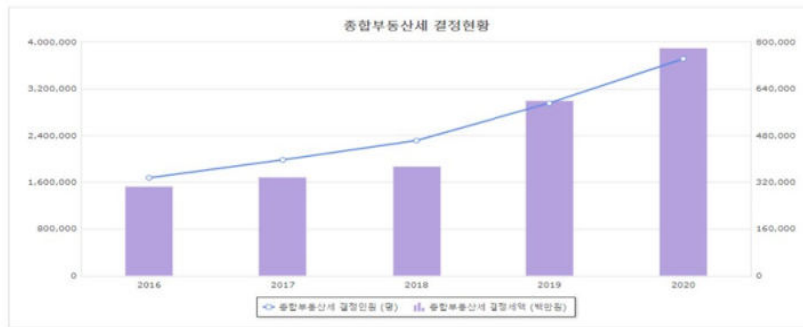
고령자공제 20-40%, 장기보유공제 20-50%, 공제한도 80%

5.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11억원공제 및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허용.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 각각 6억원공제.

6.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2021년)

종부세 과세 통계



통계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 (명)	335,591	397,066	463,527	592,008	743,568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백만원)	1,529,790	1,686,464	1,877,259	3,007,195	3,900,569

【출처】국세통계 7-1-1

출처: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종부세 과세 통계 - 부동산교부세

[단위: 백만원]

연도	합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000	000	000	000	000	000
2012	34,186,188	30,191,425	1,257,977	1,615,433	1,121,353	-
2013	35,724,592	31,558,105	1,314,921	1,688,560	1,163,006	-
2014	35,698,180	31,684,524	986,119	1,688,437	1,139,100	-
2015	34,888,072	32,176,185	987,407	-	1,410,400	314,080
2016	37,967,278	35,023,661	1,083,206	-	1,445,711	414,700
2017	44,363,917	41,032,266	1,269,038	-	1,549,126	513,487
2018	49,044,581	45,211,842	1,398,305	-	2,017,174	417,260
2019	57,709,283	52,602,827	1,626,892	-	2,942,062	537,502
2020	50,322,101	44,926,519	1,389,478	-	3,320,970	685,134
2021	51,754,671	44,537,686	1,377,455	-	4,935,665	903,865

출처: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50)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정책방향

1.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2022. 5.3.

2. 내용

가. 부동산세제 개편을 위한 TF구성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

나. 재산세와 중부세의 통합
증장기과세

다. 중부세 개편

- 주택보유수를 기준으로 차등과세하는 것을 주택합산가액을 기준으로 차등과세

- 세율체계 개편 등을 통해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인하

단, 부동산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

3. 평가

가. 중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나. 중부세 과세시 주택보유수를 기준으로 차등과세하는 것을 주택합산가액을 기준으로

차등과세하는 것의 적절성 검토

-예, 50억1주택자와 25억 2주택자

다. 토지에 대한 보유세과세와 관련한 언급이 없음

라. 세부담인하조치와 부동산시장상황

부동산보유세제의 문제점

1. 문제점

1. 정책적 수단으로서 조세 활용의 과도화

2. 정책의 일관성 결여

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세부담변화

3.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현실화계획(2020.11.3)

2020년 기준 69%인 현실화율을 2030년 90%까지 인상

4. 보유세의 이원화 및 중부세의 국세화

-과세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과 납세자불편

-부동산교부세의 문제점

5. 과세단위

기본적으로 인별과세. 현실적으로 주택은 세대단위로 활용

6.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그외 지역 3주택 이상)

7. 세부담 상한제로 인한 세부담불평등 초래

-신축시점에 따른 세부담왜곡의 만연

8. 주택개념과 주택수 산정의 문제

-예, 주거용 오피스텔, 별장(중부세의 경우)

9. 토지구분의 적정성

종합토지세 과세를 위해 도입한 토지구분의 부적절성. 특히, 재산세의 경우 2005년

보유세 개편으로 인해 합산과세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

부동산보유세제의 개선방안

II. 개선방안

1. 지속가능한 보유세제의 확립

과도한 부동산보유로 인한 잉여이익을 세제를 통해 환수하는 것 자체는 불가피

But 정책적 수단으로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방향과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

2. 중부세의 지방세화

공동세제도의 활용

3. 과세단위

(조정적) 부부합산과세제도 도입

4. 보유세 세부담 재조정

예, 다주택 개인과 법인

근로의욕고취와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과도한** 부동산보유에 따른 이익의 최대한 환수는 지지하나 현재의 세부담은 과도하여 **지속가능성**이 없음

5. 공시가격제도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공감대 형성

6. 세부담상한제 확대와 세율제도 재검토

7. 주택개념과 주택수 산정의 합리성확보

8. 토지구분제도의 재검토

종합, 별도, 분리 ⇒ 구분 자체를 폐지하되 가감지수제도를 도입

감사합니다.

토 론 문

김 낙 희*

1.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 진단

-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의 정책목표하에 수요억제차원에서 금융 및 조세제도 활용
 - 금융측면에서는 주택자금 대출규제(DTI, LTV, DSR)에 주력하는 한편, 세제측면에서는 취득(취득세), 보유(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양도소득세)의 각 단계별로 세율을 대폭 인상
- 수요억제차원의 부동산정책은 공급대책과의 부조화, 일시적이고 미봉적인 대책의 남발 등으로 가격안정에 실패하고 부작용만 양산
 - 특히, 무원칙한 세금인상은 조세제도의 복잡, 조세이론과의 배치 등 문제와 함께 조세 부담의 급증 및 특정분야(주택, 특히 다주택자)에의 편중으로 커다란 조세저항 야기
 -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28회에 걸친 부동산대책을 시행한 결과 제도가 복잡해지고 전문가들조차 양도소득세의 계산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
 - 일명 “양포세무사”라는 용어가 언론에 회자
 - 2021년 한해 동안 주택분 보유세가 56.9% 상승하였고, 종합부동산세는 212.9%나 상승하는 등 주택보유자의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

<주택보유세수 (결정세액) 추이 : 2016~2021년>

(단위: 조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가율	
							'16~'20	'21
- 주택분 보유세	4.0	4.5	4.9	6.3	7.2	11.9	15.8	56.9
- 종합부동산세	0.3	0.4	0.4	1.0	1.5	5.7	46.0	212.9
- 재산세	3.7	4.1	4.5	5.3	5.7	6.2	11.7	7.9

자료: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국회예산정책처, 2022.4.13.)

* 법무법인 율촌 고문, 경영학박사·세무사·(前)기재부 세제실장·(前)관세청장

- 특히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과도하게 높은 세율은 조세평등주의 위배 및 재산권의 침해 등 논란으로 위헌소송 제기
 - * 양도소득세율 최대 75%(지방세포함 82.5%), 종합부동산세율 6%(교육세 포함시 7.2%), 취득세율 2%(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시 13.4%)
- 취득세 세율인상 등 높은 거래세부담은 경제효율측면에서 “보유세 부담은 높게, 거래세 부담은 낮게” 운용하는 정책방향과도 배치

□ 2021년부터 추진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방향성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주택 유형별·가격대별 차등화정책을 펼침에 따라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 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각종 복지혜택에서도 부작용 노출

-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상향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
 - 공동주택은 69.0%(2020년 기준)인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높이며, 단독주택은 53.6%(2020년 기준)인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로 높임
 - 주택의 가격대별 목표현실화율 달성시기 차이.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가격대별 목표 현실화율(90%) 달성 시기는 시세 9억원 미만 2030년,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2027년, 15억원 이상 2025년임
-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우선 추진되면서, 세율이 아닌 부동산 과세표준의 조정을 통해 조세부담을 차등화하는 문제
 - *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납세자의 세부담 차이는 세율, 공제·감면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조세원칙에 부합(예산정책처)

2. 부동산 정책방향

□ 적정 조세부담수준의 설정 및 중장기적 조세부담수준 제시

- 보유세와 거래세의 부담수준을 진단하고, 상대적으로 부담비중이 높은 거래세는 적정수준으로 낮출 필요. 지방정부 자원문제는 국가와 지방, 지방정부간 자원조정을 통해 해결
 - 재산세는 주택가격안정에 유효한 정책수단인 반면, 거래세는 거래의 단절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어서 유효한 수단이 아님(IMF, 2016)

□ 조세원칙에 맞게 부동산에 대한 조세제도를 재정립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제도는 수요억제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조세체계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큼. 재산세를 통한 수요억제와 연계하여 적절한 시점에 폐지
- 1세대 1주택에 대한 조세체계는 현재와 같은 방식(11억원이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와 유사한 형태의 세금으로서 자산분배의 불균형 완화, 지역균형 발전, 부동산 수요억제 등 순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는 존치하되, 공정가액비율이나 세율구조의 조정 등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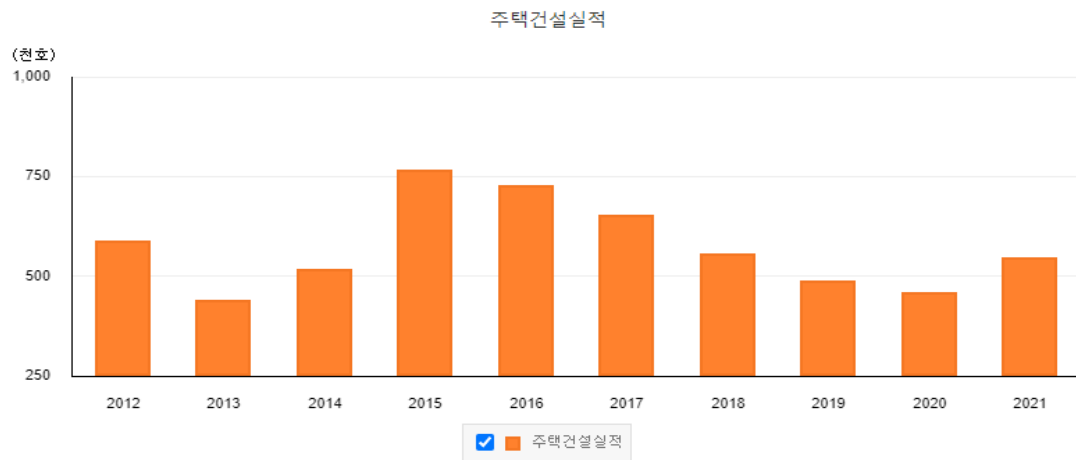
□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되, 현실화율의 시점을 시장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

- 전년대비 가격인상율의 한도(예:10%)를 둬으로써 현실화과정에서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작용을 방지
- 가격별, 주택유형별 현실화율의 차등정책은 조세이론에도 맞지 않고 부작용이 많은 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폐기

김인수*

1. 주택 공급 축소로 지대(rent)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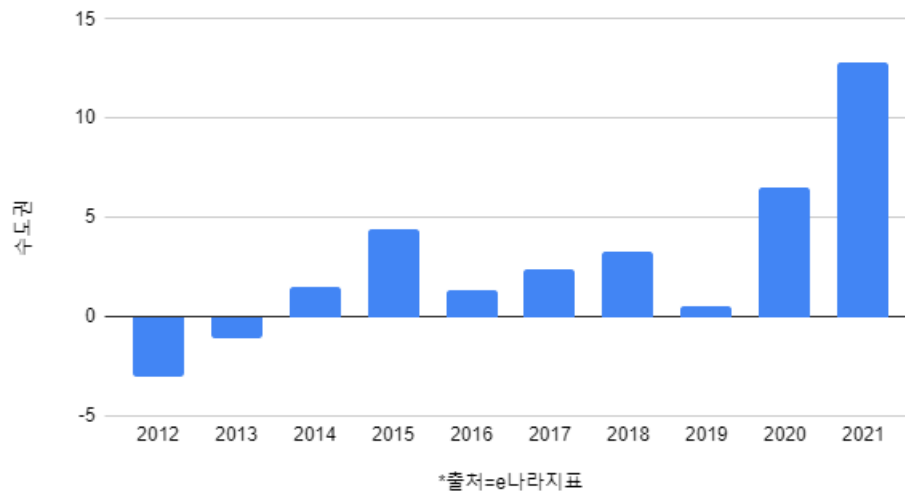
(1) 주택공급 축소



* 자료: 국토교통부, e나라지표

(2) 주택가격 상승과 지대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 매일경제 논설위원

2. 정부 스스로 지대 만들고 세금으로 환수

(1) 양도소득세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중과, 3주택자 이상은 30% 중과

(2) 종합부동산세

조정지역 2주택자는 최고 6%

(3) 효과

매물 잠김으로 인한 집값 상승, 전세금으로 전가

3. 국민의 이동성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저해

(1) 미국의 성장률 둔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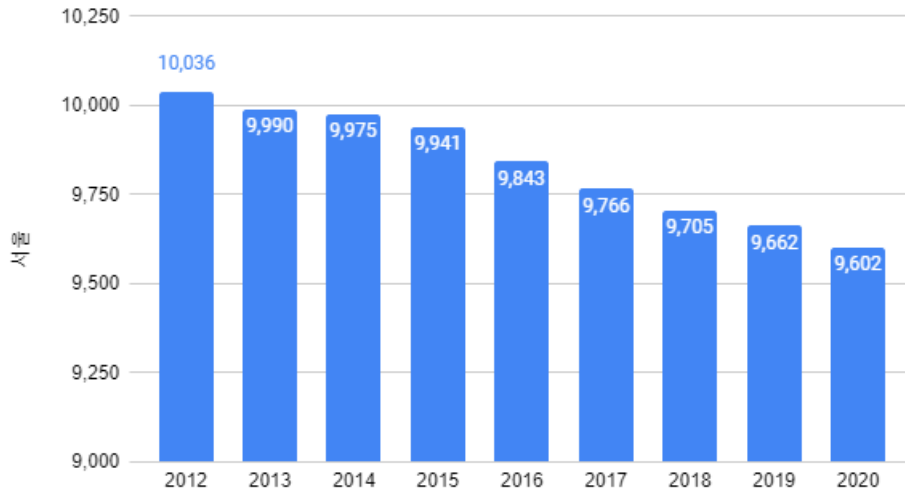
성장률	설 명
2.25%	1950-2000년 평균 성장률
-0.80%	가족 크기의 축소와 고령화 영향
-0.20%	상품에서 서비스로의 전환
-0.15%	노동자와 기업의 재분배 감소
-0.10%	지리적 이동성 감소
0%	세금과 규제, 불평등 증가, 대중국 무역
1.0%	2000-2016년 평균 성장률

* 출처 '성장의 종말(Fully Grown) 디트리히 볼레스

“셰이와 모레티는 이 세 도시에서만 주택 시장이 더욱 탄력적이었더라도 2009년 총 GDP가 3.7퍼센트 높아졌으리라고 계산했다. 셰이와 모레티는 1964~2009년 기간을 계산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GDP가 추가로 3.7퍼센트 증가하지 못한 것이 1990년경 시작한 주택 규제 증가 때문이라고 가정해보자. 당시는 주택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한 때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990~2009년만 보면 GDP에 3.7퍼센트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성장률이 연간 약 0.18퍼센트 낮아졌다는 뜻이다. 이것은 이동성 감소에 따른 현저한 성장률 하락으로, 고생산성 지역에서 주택에 규제를 가하며 발생했을 것이다.”

(2) 서울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경제성장의 관계 없나

서울 인구 추이



* 출처 '성장의 종말(Fully Grown) 디트리히 볼래스

유재선*

1. 향후 부동산세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세제개편 내용을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세금, 대출, 청약 등을 총망라한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정부의 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줬던 17년 8.2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18년 9.13대책 등 계속적이고 강력한 부동산대책들이 쏟아졌는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대책들은 급격한 전세가 상승과 집값 폭등의 도화선으로 인식되었으며 잦은 개정으로 이해하기 힘든 어렵고 복잡한 세제들로 인해 비효율과 불공평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세제도는 되도록 단순화해 불공평과 비효율을 줄여야한다는데 공감하며 앞으로의 발전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몇가지 더 청해볼까 합니다.

2.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조세의 기본원리에 맞게 예외적인 규정은 되도록 폐지하고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고가주택기준, 1세대1주택비과세에 있어 보유기간 타당성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의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 중 먼저 현재 2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조건을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하면서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비과세적 용이유를 근거로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보유 및 거주요건 역시 부동산 경기조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주택경기 과열 시에는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추가 또는 연장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88년도 부터 거주요건이 3년 이상으로 도입되었다가 폐지되고 다시 1년, 2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가 폐지되는 등 잦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고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1세대가 1주택으로 얻은 비과세혜택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보유하면 얻을 수 있어야 평등의 원리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없이 보유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자는 의견, 고가주택해당 1

* 세무법인 부강 세무사·세무학박사

세대1주택의 차등적용율에 대한 비합리성을 지적해주셨는데 이 역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가 명목이득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현재 일반 부동산의 경우 15년 30% 상한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도 필요해보입니다. 굳이 물가상승율을 매년 확인하지 않더라도 15년으로 묶어서 상한을 두는건 명목이득제거장치로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75%의 최고세율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8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규제또는 제재의 범위를 넘어서 몰수에 해당되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단기보유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중에서 50%를 초과하는 세율구조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현행 세율구조야 말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해 투기소득으로 간주하고 징벌적으로 과세하겠다는 의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적정세율에 대한 고민에 정답이 정해져있는건 아니지만 현재의 중과세율은 세제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어렵게 50%를 제시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중과배제가 의결되어 내년 5월 9일까지 시행될 예정인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루빨리 세제가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본연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유철형*

부동산 세제에 관한 정지선 교수님, 정재현 교수님, 권성오 부연구위원님, 이동식 교수님, 김민수 박사님의 발제문을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발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래에서는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 폐지 여부

현행 제도: 종부세와 재산세는 동일한 재산(주택과 토지)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보유세라는 점에서 동일(차이점은 국세와 지방세라는 점)

문제점: ① 중복과세 방지를 위해 조정장치를 두고 있으나 불완전하고 과세체계만 복잡하게 되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징세비용이 증가됨, ② 종부세로 징수한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어서 국세로서의 의미가 없음, ③ 종부세 부과목적이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종부세법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종부세 과세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정책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세율을 인상하는 등 동일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조세제도를 부동산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조세정책을 부동산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더 심각함)

개선방안: 동일 재산에 대한 보유세를 재산세로 통일하고,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면 투기 방지를 위한 특정 재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

2. 종합부동산세를 유지하는 경우 개선할 점

가. 세율 문제

현행 제도: 최고세율 6%(종부세법 제9조)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문제점: 단순계산으로 약 16-17년이면 국가가 재산의 원본을 강제몰수하는 결과 초래. 동일 재산에 대한 재산세도 고려해야

개선방안: 재산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 필요

나. 일시적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제도: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의 경우 장기보유공제제도를 두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공제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종부세법 제9조).

문제점: 결혼, 상속,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종부세법은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공제 배제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반해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중과세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개선방안: 종부세법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 규정 도입 필요(비관이 일자 정부는 2022. 2. 15. 급하게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하여 상속에 대해 일부 유예기간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대폭적인 개정 필요)

3. 양도소득세 관련

가. 양도소득세 중과세

현행 제도: 현행 소득세법은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수를 기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문제점: 현행법과 같이 과세하는 경우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이 많지 않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고, 1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크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함

개선방안: 중과세율 적용기준을 주택수가 아니라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자가 얻은 차익에 대한 과세라는 양도소득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방식

이는 두분 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양도소득세의 복잡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행 제도: 신고·납부방식(소득세법 제106조, 제111조)

문제점: ① 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관련 규정이 너무 자주 개정되어 납세자들은 물론이고 조세전문가들도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 어려움. 이 때문에 주택 양도소득세 상담이나 신고를 잘못 하었다고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상담이나 신고업무를 포기한다고 하여 ‘양포세’(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수년전부터 업계에 널리 퍼짐.

②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3-4년이 경과한 뒤에 세무조사를 통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추징을 하면서 다액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납세자들은 이러한 다액의 가산세 추징에 대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납부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수납한 후 2-3년 지난 뒤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가산세로 국고를 불린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됨

개선방안: 소득세 중 적어도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고려.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이 당초 부과과세방식에서 신고·납부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로 과세자료를 확보한다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었음. 이제는 국세청이 전산자료를 통해 주택 양도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관한 자료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므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지하지 말고 과세관청 스스로 납세자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여 사전에 납세자에게 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의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고지하여 수납하고, 이의가 있다면 이의 있는 사항에 대해 조사, 확인하여 처분을 하는 것이 납세자를 괴롭히지 않는 방안임.

4. 취득세 세율 관련

현행 제도: 1%부터 12%까지(지방세법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문제점: 세율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최고 세율 12%는 취득세의 세율로는 과다.

개선방안: 세율 구조 단순화 필요

5.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현황과 관련

권 부연구위원님께서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를 상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중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할 만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겠는지요?

6. 부부합산과세제도 관련

이동식 교수님과 김민수 박사님께서서는 부동산보유세의 과세단위를 (조정적)부부합산과세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부부간 합산과세를 하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및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로 전부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혼인한 부부를 사실혼 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선고하였고(헌재 2002. 8. 29.자 2001헌바82 결정, 헌재 2005. 5. 26.자 2004헌가6 결정), 세대별 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던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에 대해서도 역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08. 11. 13.자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결정] .

두분께서 제안하신 (조정적)부부합산과세로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위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이 전 오*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주제 : 기업세제 및 관련 조세정책 >

기업세제 및 국제조세의 정책방향

• 이 성 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22년 (사)한국조세법학회 제31차 춘계학술발표대회
- 문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윤정부의 조세정책 방향 -
발표자료

기업조세 및 국제조세의 정책방향

2022. 6. 4.

이 성 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1. 문제 제기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기업세제 및 국제조세 관련 과제

국정과제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 목표: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지원
- 주요내용
 -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

윤정부가 추진할 기업과세 핵심 과제

-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 2021년 10월 기준 지난 1년간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 512.4만명 증가”, 그런데 “전일제 취업자 수는 1년 동안 444만명 줄어”
- 과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식: 기업의 투자이익을 고취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공공 중심의 땀질 처방

- 기업조세개편 방향:

- 좋은 일자리 주역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도록** 과세개편
-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

2. 한국 기업조세제도 경쟁력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한국기업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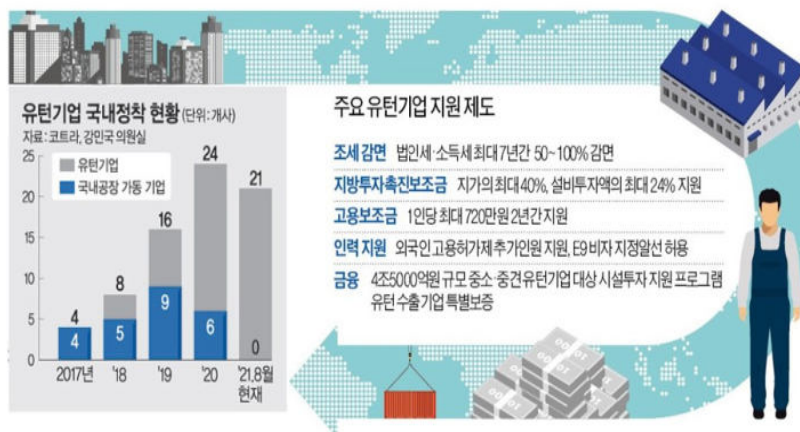
- 한국경제가 직면한 핵심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
 -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반도체 핵심소재인 불산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
 -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수요와 글로벌 공급 동시 단절 경험
 - 2021년 10월 15일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발생한 요소수 대란 그 다음은???
 - 한국 경제의 GVC 참여 정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높아,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
 - 해결방안: 한국 투자 입지 및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의 발굴과 제거가 필요
- > **현행 기업과세가 한국 기업의 국내투자 및 글로벌기업의 한국 투자를 촉진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가?**

한국의 글로벌 투자 입지 경쟁력? 2016년 이후 직접투자 순유출 급속 증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해외 직접 투자 (한국기업 해외투자)	금액 (억 달러)	295.9	309.3	285.5	303.6	395.9	446.0	497.8	618.5	565.8
	증감률 (전년비%)	0.3	4.5	-7.7	6.3	30.4	12.6	11.6	24.2	-8.5
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기업 한국투자)	금액 (억 달러)	107.1	98.9	122.2	165.8	107.9	135.6	163.9	133.6	110.9
	증감률 (전년비%)	61.3	-7.7	23.6	35.8	-34.9	25.7	20.9	-18.5	-17.0
직접투자 순유출(억 달러)		188.8	210.4	163.3	137.8	288.0	310.4	333.9	484.9	454.9

주: 해외직접투자 송금기준, 외국인직접투자(외국기업의 한국투자) 도착기준.
자료원: 기획재정부, 해외직접투자통계;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리쇼어링? 유턴지원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성적



자료원: 한국경제신문, 돌아온 기업 80곳 중 절반만 가동 중... "한국은 유턴기업 무덤", 2020년 6월 5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0563401>
문화일보, '유턴기업' 8년간 103개뿐... 공장가동도 50곳 그쳐, 2021년 10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1301071903324001>

동아일보 PICK

韓 조세경쟁력 5년새 17위→26위 '뚝'... 하락폭 OECD 최대

입력 2021.11.25 오전 9:40 | 수정 2021.11.25 오전 9:48

254 67

☰ ☰ ☰ ☰ ☰

< 한국과 06 국가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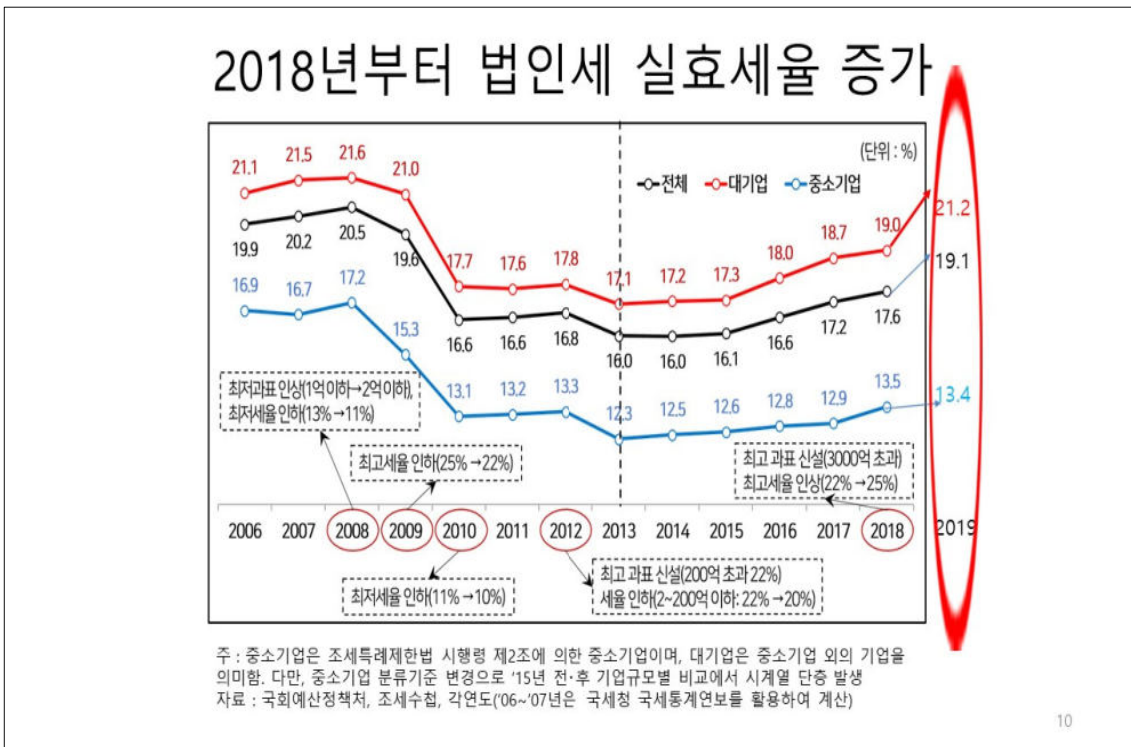
국가	2016년 순위	2021년 순위
미국	21위	21위
프랑스	22위	23위
영국	15위	16위
독일	19위	24위
일본	17위	17위
한국	17위	26위

※ 자료: Tax Foundation, '17년 18년 '21년 순위 변동

한국은 최근 5년새 세금을 너무 많이 올리고, 과세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조세경쟁력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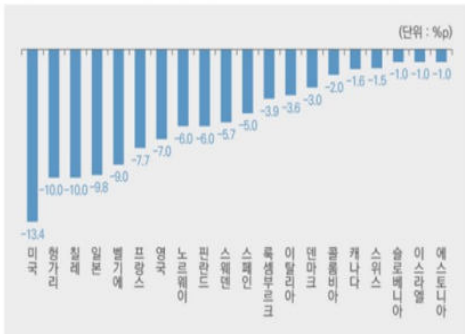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글로벌 조세경쟁력 보고서(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Report)를 활용해 한국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7개국의 조세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원: 동아일보, 韓 조세경쟁력 5년새 17위→26위 '뚝'... 하락폭 OECD 최대, 2021.11.25.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95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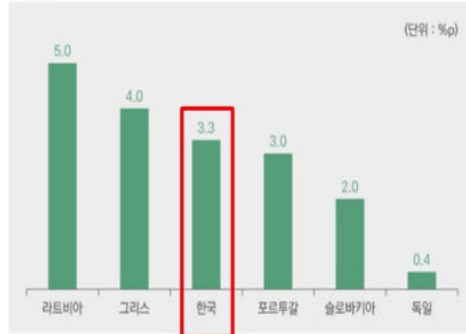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국제비교 (2011년 대비. 2020년)

▶ 세율 인하 20개국: 미국, 일본,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



▶ 세율 인상 6개국: 라트비아, 그리스, 한국, 포르투갈 등



주: 지방세 등을 포함한 최고세율 기준 (OECD Tax Database 자료), 나머지 6개국은 현상 유지
자료원: 국회예산정책처, 2021 조세수첩, 2021

법인세율 변화 추이 한국, G7 및 OECD

- 지방세(포함기준: 2021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7.5%는 OECD 국가 중 9위 수준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포함): 24.2%(’11) → 27.5%(’21)
- G7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포함): 32.8%(’11) → 26.7%(’21)
- 2021년 G7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포함)은 26.7%
- OECD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포함): 25.3%(’11) → 22.9%(’21)
- OECD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포함)은 22.9%

	(단위: %)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순위 '11	순위 '21	변동
독일	29.6	29.6	29.6	29.7	29.8	29.8	29.9	29.9	29.9	29.9	29.9	(10)	(5)	5↑
일본	39.5	39.5	37.0	37.0	32.1	30.0	30.0	29.7	29.7	29.7	29.7	(1)	(6)	5↓
프랑스	36.1	36.1	38.0	38.0	38.0	34.4	44.4	34.4	34.4	32.0	28.4	(3)	(7)	4↓
이탈리아	31.4	31.3	31.3	31.3	31.3	31.3	27.8	27.8	27.8	27.8	27.8	(6)	(9)	3↓
한국	24.2	24.2	24.2	24.2	24.2	24.2	24.2	27.5	27.5	27.5	27.5	(22)	(10)	12↑
캐나다	27.7	26.1	26.2	26.2	26.7	26.7	26.7	26.8	26.6	26.2	26.2	(15)	(11)	4↑
미국	39.2	39.1	39.0	39.1	39.0	38.9	38.9	25.8	25.9	25.8	25.8	(2)	(12)	10↓
영국	26.0	24.0	23.0	21.0	20.0	20.0	19.0	19.0	19.0	19.0	19.0	(17)	(30)	13↓
G7평균	32.8	32.2	32.0	31.8	31.0	30.2	31.0	27.6	27.6	27.2	26.7			
OECD평균	25.3	25.2	25.3	25.2	25.1	24.8	24.6	24.0	23.7	23.1	22.9			

주: ()는 OECD 37개국(몰디브 포함) 중 법인세가 높은 순위
자료: OECD Tax Database(2021.4.30. 기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법인세율 과표구간

과표 구간수	해당 국가
1개	33개국 호주 ¹⁾ , 오스트리아, 벨기에 ²⁾ , 캐나다 ³⁾ , 칠레,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⁴⁾ ,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⁵⁾ ,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2개	2개국 네덜란드 ⁶⁾ , 프랑스 ⁷⁾
3개	1개국 룩셈부르크 ⁸⁾
4개	1개국 한국

주: 특정소득(체코, 슬로베니아 등), 특정산업(이스라엘, 영국), 특정도시(룩셈부르크, 손실기업(이탈리아)), 소규모 법인(호주, 일본) 등에 대한 차등세율은 단일세율로 분류하며, 지방세(Local tax)-나 법인세에 추가되는(sur-tax)를 제외한 중앙정부 법인세 기준의 과세표준 구간수임(2020년 기준)

1) 호주: 기본세율 30%, 2500만 AUD 미만 소기업 26.0%
 2) 벨기에: 기본세율 29%에 추가 과세하는 crisis tax 2% 포함시 29.58%
 3) 캐나다: 연방법인세율은 38%이나 연방법인세 공제-감면 등을 감안한 순 법인세율은 15%, 50만 CAD 이하 소기업의 경우 공제감면으로 인해 9% 세율이 적용
 4) 일본: 기본세율은 23.4%, 과세소득 800만엔 이하 소기업 15%
 5) 포르투갈: 기본세율 21%에 부가세(sur-tax)로 과세소득 150만유로/750만 유로/3,500만유로 기준, 0%/3%p/5%p/9%p씩 추가 과세
 6) 네덜란드: 20만 유로 미만 20%, 20만 유로 이상 25%
 7) 프랑스: 매출 2억 5000만 유로 미만 28%, 2억 5000만 유로 이상 31%, 납부세액 763만 유로이상인 경우 3.3% 할증되어 32.02%
 8) 룩셈부르크: 17.5만 유로/17.5-20만 유로/20만 유로 이상 15-17%이며, 20만 유로 이상의 경우 고용기금납입료 포함 18.19%에 지방세 적용으로 24.94% 세율이 적용

자료: OECD Tax Database(2021.4.30. 기준) 및 각 국가의 과세관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1 조세수첩

제조업 비중 상위 10개 OECD 회원국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아일랜드	한국	체코	슬로베니아	헝가리	독일	일본	슬로바키아	터키	폴란드
제조업 비중('17)	33.9%	29.5%	26.8%	23.7%	23.1%	22.8%	20.8%	20.0%	19.8%	19.3%
법인세율('19)	중앙정부	12.5%	25.0%	19.0%	19.0%	9.0%	15.8%	23.2%	21.0%	22.0%
	중앙정부 + 지방세	12.5%	27.5%	19.0%	19.0%	9.0%	29.9%	29.7%	21.0%	22.0%

자료원 : OECD, Tax Database; OECD, National Account 2020년 2월 기준

법인세 한계실효세율 OECD국가비교

	한계실효세율		순위		변화(%p)
	2005	2014	2005	2014	
France	35.4	36.0	3	1	0.6
U.S.	35.9	35.3	2	2	-0.6
S. Korea	32.8	30.1	6	3	-2.7
Japan	31.5	29.3	7	4	-2.2
Austria	26.2	26.2	10	5	0.0
Spain	30.4	26.0	8	6	-4.4
Australia	25.9	25.9	11	7	0.0
Italy	33.5	24.5	5	8	-9.0
Germany	34.0	24.4	4	9	-9.6
U.K.	30.0	23.7	9	10	-6.3
단순평균	22.3	19.4	-	-	-2.9
가중평균	31.4	28.2	-	-	-3.2

자료: Chen and Mintz(2015), "The 2014 Global Tax Competitiveness Report"의 Table 3에서 재인용.
 주: 가중평균은 실질 GDP로 가중된 평균값을 의미함

자료원: 조경엽, 법인세 한계세율에 대한 소고, KERI Brief 16-17, 2016. 재인용

15

3. 기업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기업의 한국내 투자 확충 과세개편 방향성

-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 한국의 기업과세체계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해야 함.
 - 국내외 기업 모두 한국내 혁신적 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한 기업과세 개편은:
 - 첫째, 법인세율의 직접적 인하 또는 투자세액공제 확충 등 법인세 부담의 간접적 완화를 추진
 - 둘째, R&D활동 촉진을 위한 특허박스제도 및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를 확충해야 함.

17

법인세율 인하 방안

-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국내 투자활성화(기존 기업의 신규 투자, 신 산업 생성 및 성장)와 한국 투자매력도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필요
- 국내외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단위당 조세 부담(한계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
-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2019년 OECD 평균 21.7%)로 3%포인트 인하(2017년 수준 환원)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원부족 대안 실행하며, 장기적으로는 20% 이하 수준으로 인하

18

투자세액공제 확충으로 투자활성화

-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관련 조세특례의 정비를 통한 투자 실효세율 인하도 추진
-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한계실효세율 인하를 유도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 **이월결손금 공제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완화, 공제기한의 연장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

19

2021년 도입 통합투자세액공제 평가

<2020년까지 투자세액공제>

<2021년 도입 통합투자세액공제>

과거 포지티브 리스트는 기업의 주요 투자 활동의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 ① R&D 설비(1/3/7)
 -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 ③ 안전 설비(1/5/10)
 -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 ⑤ 환경보전 시설(3/5/10)
 -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 괄호 :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 (공제방식)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p 우대**
- ※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
('20~'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세액공제 투자 범위가 얼마나 확충될 수 있는지 의문임.

결국, 대기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은 크게 낮아지게 되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연구개발 투자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진행할 경우 최대공제율은 기존 14%였던 것이 지금은 기본공제(10%), 추가공제(3%) 및 신성장기술(2%)에 모두 해당해야만 최대 15%가 되어 **기존 공제율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고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대기업 1% / 중견 3% / 중소기업 10%)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 공제율(모든 기업 3%)

좋은 일자리 연계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 새로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인해서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활용을 통한 법인세 감면 혜택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나마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투자의욕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투자활성화 강력 견인할 투자세액공제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2-3년 한시적으로 범용적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투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

21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특허박스제도 도입과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특례 확충

- 좋은 일자리는 기업의 과감한 혁신 활동의 결과로 창출됨
-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 한국 내 국내/외국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로서 혁신기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 R&D투자세액공제와 특허박스제도는 유럽의 대부분 선진국에서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혁신 투자 촉진제도로, 한국도 이를 병행할 경우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고도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2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특허박스제도 도입과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특례 확충

- 좋은 일자리는 기업의 과감한 혁신 활동의 결과로 창출됨
-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 한국 내 국내/외국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로서 혁신기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 R&D투자세액공제와 특허박스제도는 유럽의 대부분 선진국에서 병행하여 운영. 한국도 이를 병행할 경우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고도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규모를 확충하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하여** 법인세 부담 감소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첨단 R&D 투자촉진

23

4.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개편

국내 기업 유보소득 배당촉진으로 국내 투자활성화

- 국내 기업의 유보소득을 배당하여 국내 투자활성화 경로는 결국 국 법인간 배당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연결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
- 법인간 배당에 대한 비과세 사례: 독일의 경우 법인간 배당의 경우 지주회사 및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95%를 비과세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법인간 배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 및 한도가 제한적

<일반법인, 법인세법 제18조의2>

최종지법인의 구분	최종지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100퍼센트	100퍼센트	
가. 우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나. 우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지주회사,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주회사의 구분	지주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4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가. 우권상장법인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나. 우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국내 배당 촉진으로 국내 투자활성화

-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국내 모회사 배당 시 이중과세방지 확대
- 세액공제 vs. 소득면제: 자본수출중립성 vs. 자본수입중립성
- 대부분 OECD 국가들은 해외 배당 소득에 대해서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국외원천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	OECD 국가(38개국)
국외소득 면세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의 자국 환류 유도 및 자국의 기업이나 자본을 유출시키지 않기 위함. • 국외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권을 포기함.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31개국)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공제한도 내에서 차감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이스라엘, 아일랜드, 한국 (7개국)

자료원: 이동건 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4회 조세실무세미나 발표자료, 2021.10.14

해외자회사 배당의 조세부담 국제비교

기본가정		(5) 요약 비교				
1.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의 기업이 해외에서 해외자회사 형태로 영업 2. 모회사의 국내소득: 5,000 억원 3. 해외 자회사의 국외소득: 각 1,000 억원(각국의 세법에 따라 직간접비용을 적절히 배부한 후의 금액으로 가정함) 4. 국가별 유효 법인세율 및 해외 자회사 소득 과세방법: 각국의 최고 법인세율에 지방세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27.5%, 국내소득에 합산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미국: 28%, 국외소득면세(100%) • 일본: 30%, 국외소득면세(95%) • 독일: 30%, 국외소득면세(95%) 5.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10%, 한.일, 한.독: 5% • 기타 국가간: 0% 		(단위: 억원)				
모회사 소재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내국세액	1,375	1,400	1,545	1,545		
외국세액	1,022	948	891	891		
전세계 부담세액	2,397	2,348	2,436	2,436		
글로벌 유효세율	29.96%	29.34%	30.45%	30.45%		
자국 세율	27.50%	28%	30%	30%		
자국 세율 초과세율	2.46%	1.34%	0.45%	0.45%		
국제적 이중과세	197	108	36	36		
이중과세 요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국별한도) 부족	원천징수세액 불공제+세율차이	원천징수세액 불공제	원천징수세액 불공제		

자료원: 이동건 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4회 조세실무세미나 발표자료, 2021.10.14

5. 윤석열정부의 기업조세 및 국제조세 정책방향

윤정부의 기업조세 및 국제조세 정책방향

- 법인세 최고세율 25% -> 22% -> 20% 수준으로 인하 및 세율 구조 단순화
- 투자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적 재도입 등을 통해서 기업의 고용연계형 투자 확대 촉진
-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확충 및 준비금 재도입 등을 통해서 기업의 혁신 활동 촉진
- 국내 법인간 배당 및 해외 자회사의 국내 모회사 배당에 대해서 95% 소득면제 도입을 통해서 한국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에서 국제경쟁력 제고

감사합니다.

금융세계 및 가상자산세계의 정책방향

• 문 성 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금융세제 및 가상자산세제의 정책방향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문성훈

2022. 6. 4

발표목차

I. 서론

II. 문재인정부의 금융세제정책 및 평가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 ISA제도 개편
3.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4. 문재인정부의 금융세제정책의 전반적 평가

III. 신정부의 금융세제 정책방향 및 향후 정책제언

1. 신정부의 금융세제 정책방향
2. 향후 금융세제 정책제언

1. 서론

문재인정부의 금융세제정책 평가

- 문재인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으로 금융상품간 조세 중립성 제고하고 소득구분을 단순화함으로써 금융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으로 평가
 - ▶ 또한 금융상품의 소득구분을 단순화하여 투자자중심의 세제를 설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ISA제도 개편으로 국민자산형성의 기초를 마련
-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개편 및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강화 등 금융세제의 수직적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세제정책은 좌초
 - ▶ 국정과제인 “과세형평 제고·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범위 확대를 추진했으나 실현되지 못함
 - ▶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과정에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과세범위가 축소되고 제도시행이 연기되는 등 금융세제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신정부의 금융세제 정책방향 및 제언

- 신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22.5.) 따르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유예할 계획
 - ▶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제고”를 위해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제도정비후 시행할 계획
 - ▶ 또한 추경호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유예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무관하게 내년부터 인하할 계획

- 본 발표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금융세제 정책을 ①금융투자소득세 도입, ②ISA제도 개편, ③가상자산 소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신정부의 금융세제 정책방향을 개괄한 후 향후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함
 - ▶ 금융세제개편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로드맵 제시
 - ▶ 금융투자소득 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하후 폐지 및 ISA 보완

5

II. 문재인정부의 금융세제정책 및 평가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투자자별 주식투자 과세체계

		개인	법인	비거주자/외국법인
증권거래세 (농특세 포함)		상장 : 0.23%, 비상장 : 0.43%		
소득 과세	양도소득	원칙 과세(10%, 20%, 25%, 30%) 단,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 시 비과세	법인세 과세 (과세표준에 따라 10~25% 누진세율)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대부분 거주지국(본국) 과세
	배당소득	14% 세율로 원천징수 단,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6~42% 누진세율)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국(한국) 과세

주식 vs 기타 금융상품 소득세 과세현황

	보유	양도/환매/상환 등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주식	○ (배당소득)	○	×	○
채권	○ (이자소득)	×	×	×
파생상품	×	△ ^{*1}	×	×
ELS	△ ^{*2} (배당소득)	×	○ (배당소득)	×
펀드	△ ^{*3} (배당소득)	×	○ (배당소득)	×

*1 코스피200 등 주식시장지수형 선물/옵션, 해외파생, CFD 등 열거
 *2 중도분배시
 *3 결산분배시 펀드단계 과세유보된 매매 및 평가차익 제외

기존 금융상품 소득세 과세의 문제점

□ (금융상품별/소득별 칸막이식 과세) 현행 개인의 금융투자소득세제는 금융상품별, 금융소득별로 칸막이식으로 차별적으로 과세

- ▶ 주식 양도소득은 상장여부, 지분율 및 시가총액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10~30%의 세율로 과세되는 데 비해, 채권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ELS, 펀드 등 환매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 (투자손실 공제 불가로 인한 과세형평 저해) 금융상품 투자이익은 과세되는 반면, 투자손실은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불가능

- ▶ 배당소득은 손실이 인정되지 않아 ELS 등 배당소득은 경제적 실질이 양도손익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ELS 등 투자손실과 통산되지 않음 ⇒ 손익의 수평적 통산불가
- ▶ 양도소득은 모두 과세되는 반면,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만 공제되어 양도소득과 양도손실의 과세취급이 비대칭적 ⇒ 손익의 수직적 통산불가

- **(직접 vs 간접투자간 조세중립성 저해)** 동일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과세상 차별이 존재
 - ▶ 주식, 채권 등에 직접투자한 경우와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펀드, 연금, 특정금전신탁/일임형랩 등 투자자의 투자방법 및 투자기구에 따라 다르게 과세
 - ▶ 개인이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도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거나 비과세하는 등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투자의사결정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수평적 과세형평도 저해

- **(국내 vs 국외투자간 과세상 차별)** 금융상품을 국내와 해외 중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과세상 차별이 발생해 투자의사결정이 왜곡
 - ▶ 일반투자자가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해외주식은과세
 - ▶ 해외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방식(직접 vs 간접투자) 또는 상품의 상장지역(국내 vs 해외)에 따라 다르게 과세되어 조세중립성 또는 수평적 과세형평이 저해

11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내용

- 문재인정부는 2020년말 세법개정을 통해 2023년 이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손익을 과세하는 한편,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
 - ▶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선진화 추진방향(’20.6.)」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확정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20.7.)에 반영하였으며 해당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2)
 - ▶ 금융투자소득세를 포함한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의 주요내용 다음과 같음
 - ① 포괄적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 ②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 허용
 - ③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 ④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12

(1) 포괄적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 ▶ **(금융투자소득의 정의)** 국내주식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
 - 금융투자소득에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익 뿐만 아니라 채권·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대부분의 양도/환매/상환차익을 포함(배당 및 이자소득 제외)
- ▶ **(기본공제)** <1그룹>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는 연 5,000만원, <2그룹>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연 250만원의 그룹별 기본공제 적용
 - 국내 상장주식에는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포함
 - 공모 국내주식형펀드는 상장주식 편입비율이 2/3 이상
- ▶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허용
 - (1단계)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
 - (2단계) 순손실(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공제(이월결손금)

13

- ▶ **(분류과세)**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같이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
 - 소득의 성격상 소득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손실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 ▶ **(세율)**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시 25% 적용
- ▶ **(과세방법)** 금융회사가 반기별 원천징수(원칙)
 - 원천징수 후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
 - 원천징수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미반영
 - 금융회사는 반기별로 국내 상장주식 등 1그룹과 기타 금융상품 등 2그룹별로 각각 기본공제 후 2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14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내용

(2)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 ▶ 펀드의 환매 및 매매차익은 금융투자소득, 분배금은 소득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
 - 적격펀드 분배금의 소득원천이 이자와 배당소득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인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 비적격 펀드는 분배금은 소득원천과 관계없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
- ▶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 기존에는 펀드의 소득원천이 상장주식 등인 경우 직접투자와의 형평성 등을 위해 비과세했기 때문에 펀드의 실제소득과 과세대상소득이 일치하지 않았음
- ▶ 펀드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
 - 기존에는 펀드의 환매 및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펀드간 손익통산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펀드 손익과 다른 투자소득간 손익통산도 불가능

15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내용

(3)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 ▶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이 부분 시행되는 '22년 0.02%p 인하, 전면시행되는 '23년 0.08%p, 총 0.1%p 인하하여 코스피/코스닥은 0.15%('23)로 과세
 - 코스피주식 : 0.25%(거래세 0.1%, 농특세 0.15%) → 0.15%(거래세 0%, 농특세 0.15%)
 - 코스닥주식 : 0.25%(거래세) → 0.15%(거래세)
 - 비상장주식 : 0.45%(거래세) → 0.35%(거래세)

15

문재인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평가

□ 문재인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조세중립성 및 단순성의 개선, 수평적 조세공평 및 세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

- ▶ 포괄적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했고, 금융투자소득을 단순화함으로써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합리적이고 이해가능한 방향으로 설계
 - 금융상품별 칸막이식 차별과세를 해소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중립성 제고
 - 금융상품별, 투자방법별, 투자지역별, 상장지역별로 자본차익이 다르게 과세되던 것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단순화하여 투자자가 이해가능할 수 있는 세제를 마련
- ▶ 금융상품간 자본차익의 동일한 과세취급을 통해 금융상품 소득간 수평적 조세공평을 제고했고, 자본소득과세의 포괄화 및 단순화라는 국제적 동향과도 부합
 -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수평적 조세공평 개선하였고, 투자손실의 이월공제를 통해 투자기간차원의 과세형평(시간관련 공평성)도 제고
 - OECD 국가중에서는 자본소득을 포괄하여 단일세율로 과세(flat rate capital income) 하는 국가가 다수를 차지 (예) 스웨덴, 독일, 일본 등(OECD, 2018)

17

□ 그러나,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이중과세 여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포괄주의 적용, 그룹별 차등적 기본공제, '금융소득'과의 수평적공평 등의 문제가 있음

- ▶ 금융투자소득세에도 불구하고 세수부족 우려 등으로 증권거래세가 유지되면서 동일한 주식양도에 두가지 세금이 중복적으로 과세
 -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중과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제적 이중과세과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 다만,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중복과세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래를 통한 총유효세율, 즉 주식 양도시 전체 과세부담이 단일과세의 경우보다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여부임
 - 한편, 거래세 폐지시 현재 증권거래세와 농특세의 세수를 어디에서 충당해야 할 지, 즉 세수중립성에 대한 고민은 병행되어야 함
 - ◆ 최근의 코로나사태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연금, 의료보험 등 정부의 재정지출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세수중립성, 즉 세제개편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지는 않도록 세제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18

▶ **열거주의 과세체계에서 금융투자소득에만 포괄주의 과세를 적용할 경우 소득세법상 체계정합성의 문제 발생가능**

- 한국의 소득세법은 미국과 같이 모든 소득을 포괄하여 과세(negative system)하는 것이 아니라,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체계(positive system)를 채택
 -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포괄주의 적용시 과세행정비용 및 납세자의 행정비용 등 조세순응비용이 기존의 소득세제에 비해 증가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
-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이자 및배당소득)을 제외하고 자본차익으로 한정하면 '포괄적'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음
 - ◆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히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재무관리 및 금융실무 측면에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소득유형별 전환이 가능
- 한편, 다른 금융투자소득과는 달리 펀드 분배금만을 소득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익도 없음
 - ◆ 펀드 분배금을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금융투자소득의 분배 유보가 가능하여 추후 환매 및 양도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소득구분의 실익이 없음

▶ **금융투자소득의 이익과 손실은 금융상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통산하는 반면, 기본공제는 금융상품별로 상품별로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는 지는 의문**

- 손익통산은 금융상품과 무관하게 손익을 통산해주는 반면, 기본공제는 그룹별로 나누어서 국내 상장주식 등 1그룹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등 2그룹은 250만원 공제
 -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던 소액주주 국내 상장주식이 과세전환됨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그룹에 대해 큰 폭의 공제를 허용한 것으로 보임
- 국내 상장주식에 허용되는 5,000만원 기본공제를 활용하여 자본차익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에 양도후 동일 주식을 재매입할 경우 취득원가가 상승해 향후 금융투자소득을 축소하는 조세회피 발생 가능
-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취지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같은 과세상 취급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본공제에서도 동일한 취급을 할 필요
 - ◆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 국내주식형 ETF 및 ETN은 법적 형식은 주식(지분증권), 펀드(수익증권), 채권(파생결합증권)으로 다르지만 투자성, 즉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입장에서 경제적 실질은 다르지 않음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그룹별로 묶어서 과세하려는 정책목적이라면, 손익통산도 그룹별로 하고 기본공제도 그룹별로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통산범위를 확대했어야 함

▶ 투자자의 투자소득 유형 및 금액에 따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간 수평적 공평의 문제도 발생

-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종합과세되고, 금융투자소득은 분류과세되는 등 과세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소득의 유형에 따라 과세부담의 차이가 발생
 - ◆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5,000만원의 배당소득이 있는 투자자 A보다 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 5,000만원의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투자자 B가 과세상 유리
 -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투자자 A는 5,000만원에 대해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가 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되는 반면, 투자자 B는 국내 상장주식 기본공제(5,000만원)로 인해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 고소득 투자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최고 45%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반면, 금융투자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최고 25%의 소득세만을 부담
 - ◆ 배당소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지만, 금융투자소득은 높은 기본공제 및 누진세율 대비 낮은 세율 적용으로 세부담이 크지 않아 소득간 수평적 공평 및 조세중립성이 훼손
 - ◆ 한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1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투자자는 금융상품이 어떤 기본공제그룹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짐
 - 국내 상장주식 등 1그룹인 경우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이 과세상 유리하고, 파생결합증권 등 2그룹인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유리

2. ISA제도 개편

ISA제도의 도입취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제도는 저금리, 고령화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에 도입된 절세형 종합자산관리계좌

- ▶ 영국의 ISA, 일본의 NISA를 벤치마크로 하여 도입
- ▶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국민재산형성 지원 목적
 - 특정계층이 아닌 일반국민 대상으로 재산형성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 도입당시 일몰도래되는 근로자, 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상품인 재형저축, 소장펀드를 재설계
- ▶ 가입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관리
 - 계좌내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 가입한도가 연 2천만원(총 1억원)으로 다른 비과세/분리과세상품보다 높은 편이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입 가능

23

현행 ISA제도의 개요

□ 가입대상자 및 의무 가입기간

- ▶ (가입대상자) 19세 이상인 자 / 15세 이상인 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 단,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 (의무 가입기간) 3년, 연장 가능

□ ISA계좌의 요건

- ▶ (계좌형태) 신탁형(신탁업자), 일임형(일임업자), 투자중개형(증권사) 중 하나의 계좌만 개설가능
- ▶ (투자가능상품) 예금, 적금, 공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에 투자가능
- ▶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총 1억원), 5년 한도에서 미납입분 이월 가능

24

□ 세제혜택

- ▶ ISA계좌에서 가입기간 중 손익 통산 후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비과세한도 초과분은 저율(9%) 분리과세
 -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
 - ◆ 서민형은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 계좌 내 이자 및 배당소득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 양도차손도 통산가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
- ▶ 3년 이내 중도해지시 세제혜택 상당액 추징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질병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시 추징 제외
 - 납입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도 가능하나, 의무 가입기간(3년) 중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간주하여 세제혜택 추징
- ▶ 영구적으로 가입가능('21년 일몰폐지)

25

ISA제도 연혁

- ISA는 박근혜정부가 2016년 도입했으나, ISA계좌의 대부분이 은행예금 등에 치중되어 국민재산형성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 당초 비과세한도는 일반형과 농어민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250만원이었고 직전 연도 소득이 있던 자가 대상이었음
 - ▶ 2016년말 239만명이었던 총가입자수는 세법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말 212만명으로 감소하고 투자금액도 위축
 - ▶ 세제혜택이 미미하고 안전자산에 유리한 세제인센티브로 인해 국민재산형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은행예금 등 안전자산 쏠림현상이 발생
 - 2017년말 운용자산 중 예적금 비중이 62.6%, 국내 채권형펀드 및 ELB/DLB가 11.6%로 안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26

□ 문재인정부는 2020년말 상장주식 투자 허용, 투자중개형 신설 등 세법개정을 통해 ISA제도를 대폭적으로 개편

- ▶ 문재인정부 전반기 ISA 세법개정을 통해 ISA제도 개편을 시도했으나 계좌수와 가입규모 증가는 크지 않았고 안전자산 선호현상도 여전
 - 2017년말 세법개정으로 서민형의 비과세한도를 400만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폐지하고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을 허용
 - 2018년말 세법개정으로 퇴직자 등을 가입대상에 편입하기 위해 직전 3개연도 내 소득이 있던 자를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말로 연장
 - 2019년말 세법개정으로 ISA 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을 허용
- ▶ 문재인정부는 2020년말 세법개정을 통해 ISA 운영기간을 영구화하고 가입시 소득요건을 폐지하는 등 가입저변을 크게확대하는 한편,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고 증권사의 투자중개형 ISA를 신설하면서 국민재산형성 지원기능을 강화
 - 비과세한도 소폭 확대, 일몰연장 등 기존의 세법개정과는 달리 일몰폐지, 투자상품 및 운용기관 확대 등 대폭적인 세제개편을 단행

27

□ 2021년말 세법개정으로 2023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ISA계좌의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양도 및 환매시 발생한 소득은 한도없이 전액 비과세

- ▶ 그 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현행과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
 - 국내 상장주식 등 최종 순손실 발생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배당소득과 그 외 금융상품의 순이익(기타 금융상품의 투자손익 및 이자 및 배당소득)과 손익통산을 통산
- ▶ ISA 계좌내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 계좌내에서만 통산되며 그 외의 금융소득과는 통산되지 않기 때문에 ISA 계좌의 세제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 적용
- ▶ 납입한도(연간 2천만원, 총 1억원)와 가입기간(3년 이상)은 현행 ISA제도와 동일하게 유지
- ▶ 시행시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기와 같은 2023.1.1일 이후

28

문재인정부의 ISA제도 개편에 대한 평가

□ 문재인정부는 현재 ISA의 가입자수 및 납입금액 수준을 감안할 때 ISA제도 개편을 통해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국민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는 어느정도 달성했다고 판단

- ▶ ISA 도입이후 2020년까지는 계좌수는 감소하고 납입금액 증가는 크지않은 한편 ISA 편입자산이 대부분인 안전자산에 치중되어 있었음
- ▶ 그러나, 2020년말 대폭적 세법개정으로 계좌수와 가입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예적금비중이 감소하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증가

<ISA 가입현황>

	2016년말	2018년말	2020년말	2021년말	2022년 3월말
계좌수(만개)	239.1	215.3	193.6	342.3	432.6
납입금액(조원)	3.4	5.6	6.4	12.9	15.4
예적금비중(%)	53.9	66.7	73.8	59.7	58.1
주식비중(%)	-	-	-	14.6	16.8

29

□ 소득수준에 따라 과세혜택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하는 지는 의문

- ▶ 수직적공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총급여 등 소득금액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필요
- ▶ 다만, 비과세한도를 초과한다고 해서 세제혜택을 제한해야하는 특정계층으로 분류해 차별적 취급을 해야하는 지는의문
 - 이미 연간 가입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과세한도 설정을 통한 세제혜택의 차별은 과도

□ ISA로 형성한 자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금세제와 ISA세제간 조세중립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마련 지원을 위한 연금세제는 EET(Exempt-Exempt-Tax) 과세체계로 운용
- ▶ 이에 비해 현행 ISA세제는 TEE(Tax-Exempt-Exempt) 과세체계로 운용

30

3.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제도 도입경과

□ 문재인정부는 2020년말 세법개정을 통해 2022년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관련제도 미정비, 과세체계 미확립 등으로 시행이 유예되어 2023년부터 과세예정

- ▶ 정부는 2020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21.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었음
- ▶ 그러나, 2020년말 국회통과 과정에서 시행시기가 2022년 이후로 연기되었고 다시 2021년 5월 이후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에 대한 의원입법이 발의되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1년말 과세제도 시행이 유예되어 2023년부터 과세예정
 - 윤창현 의원 등 4인의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개념 미정립 및 관련 법 및 제도 미정비,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부족, 과세체계 미정립 등을 이유로 2023년 또는 2024년 이후로 과세시기를 유예하는 의원입법을 발의
 - 2021년말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준비가 충분하다고 반박했지만 여야합의로 시행이 다시 1년 연기되어 2023년부터 과세될 예정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제도 주요내용

□ 가상자산소득의 정의

- ▶ ‘가상자산소득’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특금법 제2조 제3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

□ 소득구분 : 기타소득

□ 소득금액 계산 : 가상자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총수입금액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받은 대가
- ▶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 등으로 관련 부대비용 포함
 - 취득가액 평가방법은 신고수리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이동평균법, 이외는 선입선출법
 - 2023.1.1. 시행 이전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2.12.31.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33

□ 과세방법

- ▶ 분리과세(원천징수 없음)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결정세액을 종합소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 ▶ 과세최저한 : 250만원
- ▶ 세율 : 20%
 - 결정세액 계산 : (가상자산 소득금액 - 250만원) × 20%
- ▶ 손익통산 :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 ▶ 신고 및 납부 : 연 1회 신고 및 납부(확정신고)

□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 ▶ 원천징수금액: MIN [양도가액×10%, (양도가액 - 취득가액)×20%]

34

가상자산 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비교

	가상자산소득	금융투자소득
소득구분	기타소득 (종합소득)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
소득공제 (과세최저한)	250만원	상장주식 등 :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 250만원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 가상자산소득내 손익통산 - 이월공제 불인정	- 모든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 5년간 이월공제
원천징수	- 원천징수 X (분리과세 확정신고)	- 원천징수 ○ (분류과세 원천징수/확정신고)

35

문재인정부의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

- 문재인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은 금융투자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했다고 판단
 - ▶ 금융투자소득이 2023년부터 과세될 예정인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과 유사한 성격이 있는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필요
- 그러나, 가상자산의 성격이 금융투자소득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수평적 형평성 및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저해
 - ▶ 정부는 가상자산이 국제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이라는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으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개인의 소득세 과세를 회계기준과 연계할 필요는 없음
 - ▶ 금융투자소득은 소득간 손익통산 뿐만 아니라 손실을 이월공제하고 기본공제도 상장주식 등(5,000만원)의 경우 가상자산의 20배(250만원)에 해당해 소득간 형평성 및 중립성이 침해

36

4. 문재인정부의 금융세제정책의 전반적 평가

금융세제를 조세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로 개편

- 문재인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통해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하고 소득구분을 단순화함으로써 금융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
 - ▶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여 양도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서로 다르게 과세되던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의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금융상품소득간 조세중립성이 제고
 - ▶ 또한 금융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득간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

- 또한 금융상품의 소득구분을 단순화하여 투자자중심의 세제를 설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ISA제도 개편으로 국민자산형성의 기초를 마련
 - ▶ 금융상품별·방법·지역별 등과 관계없이 금융상품 소득과세를 금융투자소득으로 통일
 - ▶ 투자중개형 신설을 통한 주식투자 허용으로 ISA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저금리·고령화시대의 종합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목적을 어느정도 달성

금융세제의 수직적 공정성 및 정책적 명확성 미흡

- 문재인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개편 및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강화 등 금융세제의 수직적 공정제고를 위한 정책은 미시행
 - ▶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인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기재부)”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2,000→1,000만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범위 확대(시가총액 10→3억원)를 추진했으나 실현되지 못함
 - 한편, 고소득자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배당소득(최고 45%)으로 과세되던 펀드, ELS 등 소득이 분류과세(20/25%)되어 과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어 금융세제의 수직적 공정성은 악화될 수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과정에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과세범위 축소, 시행연기 등 조세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
 - ▶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범위 확대(2,000→5,000만원), 이월공제기간 확대(3→5년), 펀드과세도입시기 연기(‘22→’23년), 가상자산과세 도입시기 연기(‘21.10→’23)

39

III. 신정부의 금융세제 정책방향 및 향후 정책제언

1. 신정부의 금융세제 정책방향

상장주식양도세 폐지 및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과세 연기

□ 신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세과세는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유예할 계획

▶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금융위)”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2년 유예)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전면폐지는 아니고 현행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상향(30/50/100억원 등)하여 실질적으로 폐지할 계획으로 보임

□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추가로 인하할 방침

▶ 추경호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무관하게 2023년부터 인하할 계획을 밝힘

- 생산적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투자자 또는 시장의 수용성 미흡, 주식시장 활성화 등 목적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증권거래세 정리방침

2. 향후 금융세제 정책제언

금융세제개편의 구체적이고 합리적 로드맵 제시

- 신정부가 유예할 계획으로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해 ① 원안유지, ② 일부 수정후 시행, ③ 원안폐기 후 재설계 중 어떠한 선택지를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마련 필요
 - ▶ 향후 금융세제개편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소득간 과세형평 등 조세정책의 왜곡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금융시장의 혼란이 예상
 - ▶ 금융세제개편에 대해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세가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준비할 필요

-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는 기간 중에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투자자간 과세형평, 금융상품간 과세형평,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 등의 문제는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지역이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 세후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예) 동학개미 vs 서학개미

금융투자소득 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하 후 폐지 및 ISA 보완

□ 향후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범위 확대, ISA제도 보완, 세수중립적 금융세제 개편 등을 검토할 필요

▶ ‘포괄적’ 금융투자소득이 되기 위해 양도차익 뿐만 아니라 향후 이자·배당소득 및 가상자산소득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킬 지 검토할 필요

-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의 법적 형식은 유지하더라도 소득 및 손실통산, 동일세율 적용 등을 통해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추구할 필요
 -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될 경우 세수가 감소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비과세/감면 대폭 축소와 병행될 경우 오히려 세수가 증가하고 과세형평도 제고될 수 있음
- 또한 금융투자소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 ◆ 다만, 가상자산소득의 높은 변동성 등을 감안하면 그 경제적 실질이 주식보다는 파생상품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손실공제는 파생상품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는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파생상품 소득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상장주식 등은 5,000만원), 결손금은 위탁증거금을 초과할 수 없음

45

▶ 주식양도라는 동일 거래에 대해 단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중립성, 조세단순성, 국제적 정합성 등 과세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 인하 후 폐지할 필요

- 다만, 최근의 코로나사태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연금, 의료보험 등 정부의 재정지출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래세 폐지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세수를 어디에서 충당해야 할 지에 대한 대책은 필요
-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ISA계좌의 국내 상장주식 등의 자본이익은 비과세되고 자본손실은 다른 소득에서 차감되는 것은 세제정합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국내 상장주식 등의 자본차익이 5,000만원 공제되는 것에 대한 ISA제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ISA 세제를 개편한 것임
 - ◆ 그러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하고 손실을 차감하는 비대칭적 과세취급은 소득세제의 정합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특례로 비취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할 필요
 - 또한, ISA제도가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체수단으로써 기능할 것인지 고령화를 대비하여 연금세제와 통합하여 설계할 것인지 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수립 필요

46

개인소득세 및 상속세제의 정책방향

• 최 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소득세 및 상증세제의 정책방향

발표자 최 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I. 문재인 정부(집권 기간: 2017. 5. 10~2022. 5. 9.)의 GDP변천

(단위: US \$ million)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529,756	1,720,489	1,629,532	1,586,786	1,823,852

▶ 2017년 대비 2021년 GDP 증가율 : 19.22%

※ 출처: <https://namu.wiki/w/국가별명목GDP순위>

2

Ⅱ. 문재인 정부의 세수 변천

(단위: 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소득세	75조	84조	83조	93조	114조
상속세	2조5천억	2조5천억	2조7천억	4조2천억	7조
증여세	4조7천억	5조3천억	5조5천억	5조6천억	8조

▶ 2017년 대비 2021년 세수 증가율: 소득세 52%, 상속세 180%, 증여세 70%

※출처: <https://www.index.go.kr/potal/main/국세수입실적>

3

Ⅲ.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세제 공약

- 3대 정책기조: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 집권 5년간 공약이행을 위한 178조원 조달방안: 82조원의 세입확충 (세수 증대 60조원, 과세기반 확충 17조원), 84조원의 세출절감 등

▶ 구체적 증세 공약

- ① 고소득자 과세강화
- ②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 ③ 자산가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강화

4

IV. 문재인 정부의 소득세제 변천

1. 소득세율의 변천(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2017년 세율	2018년 세율	2021년 세율
1200만원 이하	6%	6%	6%
1200만원 ~ 4600만원	15%	15%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24%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35%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8%	38%
3억원 ~ 5억원		40%	40%
5억원 ~ 10억원	40%	42%	42%
10억원 초과			45%

※ 소득구간이 6구간에서 8구간으로 늘고, 최고세율이 40%에서 45%로 증가

5

2. 그 밖의 주요 개정 사항(양도소득세 제외)

가. 2018. 1. 1. 시행 법령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2021년 1월 1일부터 6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6세 이하 자녀 중 둘째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폐지함.(제59조의2)

나. 2019. 1. 1. 시행 법령

2주택 이상 소유자의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6

다. 2020. 1. 1. 시행 법령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라. 2021. 1. 1. 시행 법령

1)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함** (2023. 1.

1. 부터 시행) - **기타소득**

2)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그 성격 및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2023. 1. 1. 부터 시행).

7

V. 문재인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변천

1. 증세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2018. 1. 1. 시행 법령)

가. 기업상속 지원제도의 축소(제18조제2항제1호, 제18조제3항)

1) 종전에는 기업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3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5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해야 하였으나, 2018년 이후로는 그 기간을 각각 20년 이상 및 30년 이상으로 조정함.

2)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기업상속인의 기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기업상속인이 납부하는 상속세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8

V. 문재인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변천

나.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제69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8조)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5퍼센트,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3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함.

2. 개혁에 대한 평가

※ 문재인 정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증세를 위한 제도상의 개혁은 뚜렷한 것이 없음. 세수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및 세원의 투명성 강화로 인한 것임.

VI. 현 정부의 세제 개혁 공약 및 평가

1. 세제 개혁 공약(법률신문, 2022. 4. 8. 법무법인 세종 참조)

가. 기업경쟁력강화

1)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력 충원을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에게도 비과세, 행사이익 세금 분할 납부, 양도 시점 과세 이연 등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확대.

2)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사후관리 기한을 현행 7년보다 단축.

3)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E-커머스를 위한 물류설비 자동화,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확대,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시설에 대한 지원, 대기업과 복지 인프라 공유 시 세제 지원.

VI. 현 정부의 세제 개혁 공약 및 평가

나. 금융선진화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고, 개인(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며,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다. 서민복지향상

- 1)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 상향.
- 2)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한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상향.
- 3) 서민의 주거비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인은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공제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확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2배 상향, 연 월세액 한도를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상향.

11

VI. 현 정부의 세제 개혁 공약 및 평가

2. 현 정부 세제 개혁 공약에 대한 평가

기업경쟁력 강화, 금융선진화, 서민복지 향상이라는 정책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나, 그 방안이 기존에 있던 제도상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제도 시행을 유예 또는 폐지하는 등의 수준이어서 특별히 큰 틀에서의 세제 개혁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현 정부는 그간의 대선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세제 변화로 인한 과도한 세금 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으로 탄생한 정부이므로 보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계층을 대변하는 과감한 세제 개혁이 필요함.

12

Ⅶ. 현 정부를 위한 제언

1. 소득세제의 개혁

가. 소득세율표상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설정

(1) 문제점

- 현재의 과표 설정 기준이 되는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은 2008년 이후 변동 없음. 대한민국의 2008년 기준 1인당 GDP는 \$27,658에서 2021년은 \$35,030으로 26%이상 상승함.
- 서울표상의 과표구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세부담이 증가됨.

13

Ⅶ. 현 정부를 위한 제언

(2) 제언 : 물가연동형세율제도

- 미국은 1986년 세법 개정(1989년 부터 시행)으로 소비자물가상승율에 따라 변동되는 “물가연동형 세율제도”를 도입함(I.R.C. § 1 (f))
- 물가연동형세율제도의 도입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를 방지함.

나. 부부 중심의 과세체계(과세단위)

(1) 문제점

- 외벌이 부부와 맞벌이 부부간의 세 부담의 형평 상실 : 개인별(부부 분리) 신고제도로 인하여 부부 단위로 소득이 동일한 경우 누진세율로 인하여 외벌이 부부가 맞벌이 부부에 비하여 세부담이 많은 구조

14



Ⅶ. 현 정부를 위한 제언

(2) 제언 : 2분2승제

- 독일의 2분 2승제 :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부부는 개별신고하는 경우와 합산신고하는 경우를 선택할 수 있음.(§ 26 (1) EstG) 부부는 이 때 연대납세의무를 짐.(§ 26b EstG)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과세기간 동안 각자 가득한 소득을 합한 다음 이에 대하여 2분의 1을 하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나온 세액을 2배로 신고세액을 산정함.(§ 32a (1) (5) EstG)

- 2분2승제의 도입으로 소득이 동일한 부부단위의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세부담 감소.

Ⅶ. 현 정부를 위한 제언

2. 상속세제의 개혁

가. 상속세율

(1) 현행 상속세율표

과세표준	세율(구간별)
1 억원 이하	10%
1억원~5억원	20%
5억원~10억원	30%
10억원~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 2000년 이후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변동 없음

※ 2000년도의 1인당 GDP는 US \$ 12,256에서 2021년도 US \$ 35,030으로 2.8배 성장

Ⅶ. 현 정부를 위한 제언

(2) 제언: 상속세율의 개편(상속세 인하)

• 독일의 상속세율표: 3형으로 구분 ⇒ 1형: 배우자, 자녀, 2형: 부모, 형제자매, 3형: 그 밖의 상속인 또는 특정목적의 증여 (§ 15 (1) ErbStG)

• 독일의 1형 상속세율표 (§ 19 (1) ErbStG)

과세표준(Euro)-구간별 (괄호 안 원화)	세율(%)
75,000이하(약 1억원)	7
300,000이하(약 4억원)	11
600,000이하(약 8억원)	15
6,000,000이하(약 80억원)	19
13,000,000이하(약 173억원)	23
26,000,000이하(약 347억원)	27
26,000,000초과	30

17

Ⅶ. 현 정부를 위한 제언

• 중산층의 상속세율을 20%이하로 낮추어 세부담 완화.

•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의 폭을 늘려(예, 최고 세율 구간: 200억 초과와 경우 40%),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의 재산축적에 대한 자유를 신장함으로써 경제활성화추진.

나. 유산취득세의 도입

(1) 현행 제도: 유산세 방식

• 문제점: 상속인의 수와 관계없이 동일 상속세 부담, 상속인 아닌 자(예, 첩)에 대한 생전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함.

(2) 순수한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간 사실과 다른 상속재산 분산으로 인한 조세회피가능성 있음

(3) 일본의 변형된 유산취득세제: 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된 세액을 합산하여 다시 실제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부과하고, 상속인들간에 연대납세의무 부여함.(일본 상속세법 제16조, 제17조, 제34조)

(4) 제언: 일본의 변형된 유산취득세제 도입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18

Ⅶ. 현 정부를 위한 제언

3. 증여세제의 개혁

○ 증여재산공제제도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배우자인 경우 6억원은 2008년 이후,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원은 2014년 이후 변동 없음.

▶ 그간의 GDP 상승, 부동산가격의 상승,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 있음.
(예, 배우자 - 10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1억원)

19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

토론문

김두형*

1. 종합의견

윤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법인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합리화,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등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세제상 큰 변화나 개혁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향후 세부적인 세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문정부에서 어렵게 입법되었음에도 아직 시행해보지 못한 금융세제 등은 합리적인 입장에서 윤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수정 보완 하더라도 수용하는 자세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문정부는 날로 심화되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 제고를 명분으로 고액자산가와 대기업에 종전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채택했으나 뜻밖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가격 급상승으로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 여론 악화를 초래함. 정책 방향이 소득재분배에 집중하고 더 많은 사회복지 지출을 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세제의 급격한 변화나 과도한 세부담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움을 시사함.

이에 따라 윤정부의 공약은 주로 국민의 세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역설적으로 문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자산가치 상승과 기업의 양호한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 세수를 기록했고 재난지원금 등 급박한 재정수요에 가용 가능한 재원이 되었음.

향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침체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공공재원의 확보와 장래 세수 부족에 대비한다면 윤정부의 조세정책 중 대폭의 세율 인하와 같은 선심성 조치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

비록 중산층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개선을 추구하더라도 자산가치에 상응하는 적절한 세 부담을 지워야 보유자산 간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의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향후 조세정책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봄.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기업조세 및 국제조세의 정책방향

윤정부의 기업조세 및 국제조세의 큰 정책 방향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임. 그 방안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세율구조 단순화와 각종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제시하고 있음.

발제자의 견해도 법인세율의 인하로 세부담의 완화, 연구개발투자세액공제 확충, 기업의 유보소득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개편에 따른 국내투자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윤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크게 이견이 없고 대체로 동의하지만 과거 여러 정부에서 유사한 정책이 실시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조세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함.

따라서 이와 같은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기업 우대조치가 정치적 공약의 이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투자 확대와 근로자 고용 증대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함으로써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3. 금융세제 및 가상자산세제의 정책방향

발제자의 상세한 검토 및 분석에서 드러나듯이 문정부의 금융 및 가상자산 조세정책은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잘 반영됨. 따라서 윤정부에서도 긍정 검토 후 장래 시행할 여지가 있다고 봄.

가. 금융소득세 도입에 대한 평가

자본시장의 성장과 함께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금융상품 과세범위에 대한 조정과 유사상품 간 과세형평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융투자소득 제도를 도입함.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채권 매매차익, 주식 양도차익 및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등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금융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득 간 조세의 중립성이 유지되지 못하여 공평성 및 효율성을 저해함.

더욱이 과세방식 측면에서 금융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음.

나아가 금융소득 간 통산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저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의 쏠림 현상 등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복수의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불합리와 문제점 발생함. 금융투자소득은 원본 손실 및 원본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손익 통산을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조세의 공평성 측면에서 타당함.

금융투자상품의 장기 보유로 인한 결집효과를 감안하여 장기 보유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투자 손익과 관계없이 주식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세율이 낮아 주식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큰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제한적 소득개념과 열거주의 소득세 과세체제로 인해 과세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식 등 다른 자산의 경우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에 맞음. 즉,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배경은 과세를 정상화하고 소득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의 경우 순자산증가설 채택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로 수익발생시 과세가능하고, 상속·증여세의 경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에 대해 과세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상자산이 지불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요국 소득과세의 경우 가상자산의 자산적 성격을 인정하여 자본소득(미국, 영국, 프랑스)으로 보거나 기타소득(독일, 일본)으로 보고 종합과세하거나 분류과세 함.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손익통산을 인정하고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로 입법되어 있어 합리적으로 평가됨.

과세방법은 양도소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하여 대체로 주식에 대한 과세와 유사함. 따라서 소액주주의 주식에 대한 과세 여부와 함께 논의해야 타당할 것으로 보임.

4. 개인소득세 및 상속세제의 정책방향

가. 소득세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과세를 확대하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제도를 보완,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공평과세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할 것임.

금융선진화를 명목으로 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등의 개선에 대해서는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서민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소득공제, 그 밖의 세액 공제 등의 확대도 바람직함.

발제자의 제언 중 물가연동형 세율제도는 이론적으로 탁월한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세 신고납부 실무에서 다소 복잡하여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납세자의 순응비용 증가, 조세법률의 예측 가능성 측면 등에서 문제점 발생 가능성 있음. 다만 일정한 시간적 간격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봄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 과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부부의 경우 경제공동체임을 감안하면 문제가 있으므로 선진국의 예에 따라 개선 필요성. 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2분2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우수하므로 미국이나 독일식 제도를 참조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상속세 및 증여세제

상속세제는 국가별로 상속에 관한 사회문화적 전통, 경제적 상황, 납세환경, 국민의 소득수준을 포괄하는 조세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음. 무엇보다도 부의 대물림이라는 증여 또는 재산상속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 입법되고 운영될 수밖에 없음.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경우 그 동안 적용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굳이 변화를 주기보다 과세체계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움직임이 있으나 과거 일본에서도 경험했듯이 양 제도 장단점에 극명한 대립이 있는 만큼 비교적 단순하게 적용 가능한 현 제도를 유지해도 무리가 없음.

다만 1996년 말 법률 개정을 거쳐 세율 및 과세구간 통합,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 확대 등 제도가 크게 변화한 이후 상속공제 범위가 일부 상향 조정되었을 뿐 현재까지 기본적인 골격 변화가 거의 없으나, 근래 전반적인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자와 부담이 늘어난 것이 분명하므로 각종 공제 폭을 넓혀야 함.

외국과 비교해보면 상속세 기초공제액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므로 기초공제액을 대폭 증액하여 과세대상을 줄일 필요가 있음. 나아가 오늘날 일괄공제보다 항목별공제액이 더 클 정도

로 자녀 수가 많지 않고 가족 구성이 단순한 점에서 세액계산이 그리 복잡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일괄공제를 폐지하되 그 부분을 개인의 항목별 공제로 흡수하여 공제금액을 현실화함이 바람직 함.

가업상속·영농상속공제는 상증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항에 위치해 있으나 다른 인적·물적 공제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 기초공제의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24조의 공제 적용 한도에서 빼내서 독립된 공제제도로 운용해야 함.

증여세의 경우도 자산가치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등을 감안할 때 증여공제 폭을 확대하여 과세대상을 줄이고,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를 고려할 때 노인 보유 자산의 세대 이전을 통한 산업자본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속개시 전에 사전증여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2주제: 기업세제 및 관련 조세정책에 대한 토론]

KAIST 경영공학부
류혁선 교수

들어가며...

- ❖ 유익한 발표자료를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조세법학회와 이성봉 교수님, 문성훈 교수님 그리고 최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 토론의 시간 제약상 다른 토론자 분들도 있기에 저는 주로 문성훈 교수님 발표 중 “금융투자소득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 ❖ 추후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세법학회 2022년 제31차 춘계학술발표대회 토론

투자문화와 조세정책

- ❖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 세제 역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 ❖ 세금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세법을 지도하는 이념은 크게 효율과 공평이다.
 - ❖ 효율이란 세금이 미치는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 ❖ 공평이란 담세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
- ❖ 비중립적 세제는 이를 가질만한 공익이 있는가? 또는 비례의 원칙이 만족되는가를 심사해야 한다.
 - ❖ 세부담의 차이는 있지만 의도한 경제조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비효율적 조세특례(중과세나 감경)가 있다면, 그런 특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헌이다(헌법재판소 1996.6.26 93헌바2 결정)

한국조세법학회 2022년 제31차 춘계학술발표대회 토론

투자문화와 조세정책

- ❖ 현행 금융상품 세제
 - ❖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투자 vehicle에 따라 세후 수익률이 달라지는 비중립적 과세 체계
 - 해외주식 직접투자(양도소득 분류과세) v. 펀드투자(배당소득 의제, 종합소득과세)
 - 채권 펀드(쿠폰 및 자본이득도 과세) v. 채권(쿠폰에만 과세)
 - FoF(통산) v. Wrap(비통산) 등
 - ❖ 손익통산 불허 → 재무이론에 입각한 포트폴리오 투자 불가
 - ❖ 배당의제소득의 남발(ELS/ DLS 발생수익, 해외펀드 발생수익 등)

투자문화와 조세정책

❖ 현행 금융상품 세제

❖ 소득 유형별 과세여부 (개인투자자 기준)

지역	상품	구분	펀드 내 매매 시 과세여부	직접 매매 시 과세여부
국내	주식	매매차익	X	X
		배당소득	○	○
	채권	매매차익	○	X
		이자소득	○	○
해외	주식	매매차익	○	○ (양도세)
		배당소득	○	○
		환차익	○	X
	채권	매매차익	○	X
		이자소득	○	○
		환차익	○	X

투자문화와 조세정책

❖ 재무이론에 따른 분산투자의 효과 반영되도록 개선 필요!

- ❖ 자본시장의 육성과 합리적인 투자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관련 손익에 대한 통산을 전제로 과세체계 수립이 필요.
- ❖ 다만, 투자성이 없는 이자소득 등은 현행과 같이 종합소득 과세의 영역으로 놓고, 자본시장관련 손익만 통산하는 것이 정책 목표 달성에 더 바람직할 것임.
 - 이자소득은 위험분산의 대상이 아님. 통산 포함 시 레버리지 투자로 악용될 여지가 있음.
- ❖ 즉, 금융투자상품의 시세차익과 배당소득(배당의제소득 포함)만 통산
 - CAPM의 수익률은 배당수익 포함 개념
 - 배당소득은 자본이득의 중간정산 성격

투자문화와 조세정책

◆ 금융투자소득 통산 제도 도입

- ❖ 2020. 12. 2.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021. 2. 17. 공포
- ❖ 2023. 1. 1. 시행 예정
-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전반에 큰 폭의 변화, 포트폴리오 투자의 실효성 개선
 - ➡ 금융소비자의 투자 행태 변화
- ❖ BUT 2년 유예?

한국 가계 금융자산 구성

◆ 한국 가계 금융자산 비중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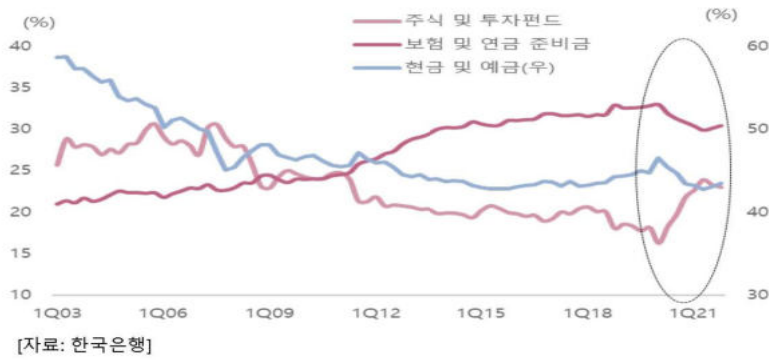
한국 가계 금융자산구성

연말	현금·예금	금융투자상품				보험·연금	기타
		주식	채권	펀드	소계		
2015	42.8	16.5	5.7	3.5	25.7	31.1	0.5
2016	43.7	15.7	5.1	3.2	24.0	31.8	0.5
2017	43.1	17.4	4.2	3.0	24.7	31.8	0.5
2018	44.3	15.2	4.2	2.9	22.3	32.9	0.5
2019	44.8	15.3	3.6	2.8	21.7	32.8	0.6
2020	43.4	19.4	3.4	2.4	25.2	30.8	0.7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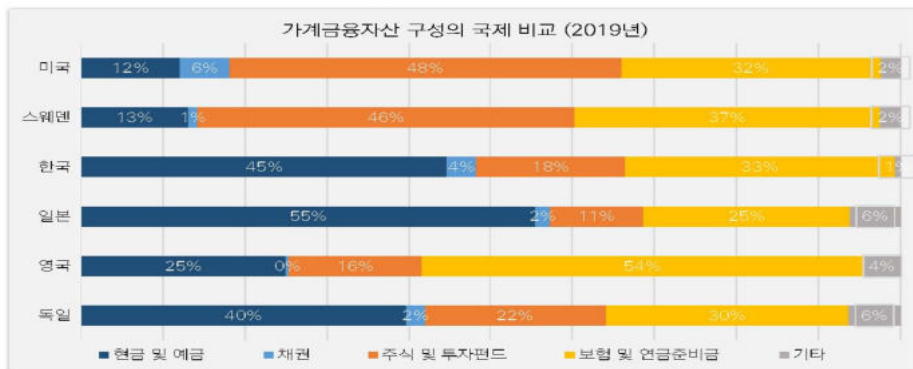
한국 가계 금융자산 구성

한국 가계 금융자산 비중 연도별 추이



한국 가계 금융자산 구성

한국 가계 금융자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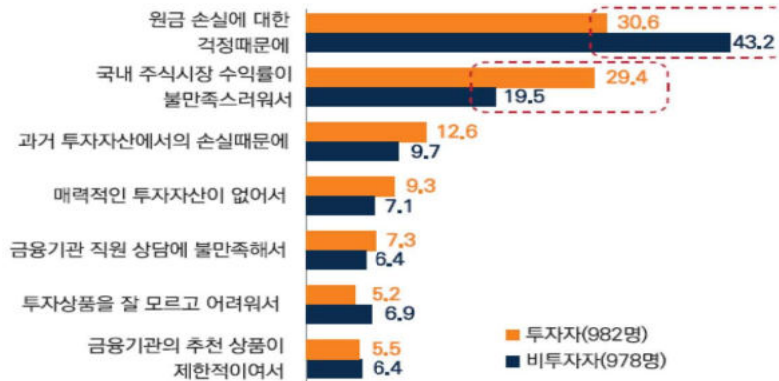


한국조세법학회 2022년 제31차 춘계학술발표대회 토론

한국 가계 금융자산 구성

◆ 금융투자 줄이려는 이유는 '원금손실 우려' 와 '수익률

국내 주식/채권 투자 여부에 따른 국내 투자의 애로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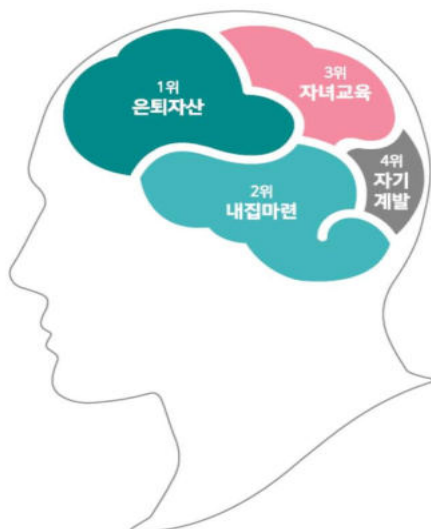


대상: 50대 직장인 가계 (n=1960)

[자료: 미래에셋은행연구소]

한국조세법학회 2022년 제31차 춘계학술발표대회 토론

자산축적의 필요성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40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과제는?

“은퇴자산”

[조사대상]

- 연령: 40대(1972~1981년생)
- 거주지역: 서울 및 4대 광역시 거주자 1,000명
- 조사기관: 하나금융연구소

자산축적의 필요성



- 40대는 은퇴자산 마련을 가장 중요한 인생과제로 보았으나, 부여한 중요도와는 달리 은퇴자산 마련 중간점검 점수는 **100점 만점에 45점에 불과**
- 40대 중 65%가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 월 **61만원 납입**

[조사대상]
 - 연령: 40대(1972~1981년생),
 - 거주지역: 서울 및 4대 광역시 거주자 1,000명
 - 조사기관: 하나금융연구소

자산축적의 필요성

국가별 사적연금 가입률

국가	의무연금 소득대체율	사적연금 가입률
미국	71.3%	47.1%
일본	57.7%	50.8%
독일	50.9%	70.4%
한국	39.3%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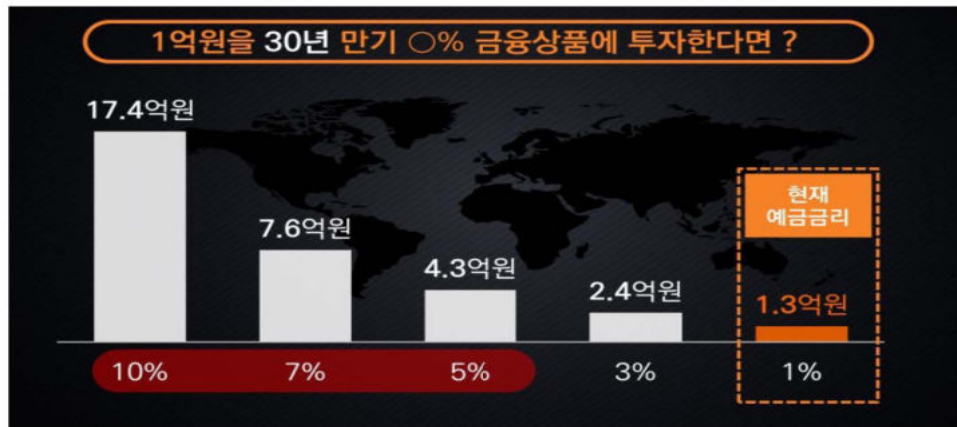
[자료: OECD]

한국조세법학회 2022년 제31차 춘계학술발표대회 토론

자산축적의 필요성

자산 수익률의 중요성
복리 효과! 자산을 일하게 하라

1억원을 30년 만기 0%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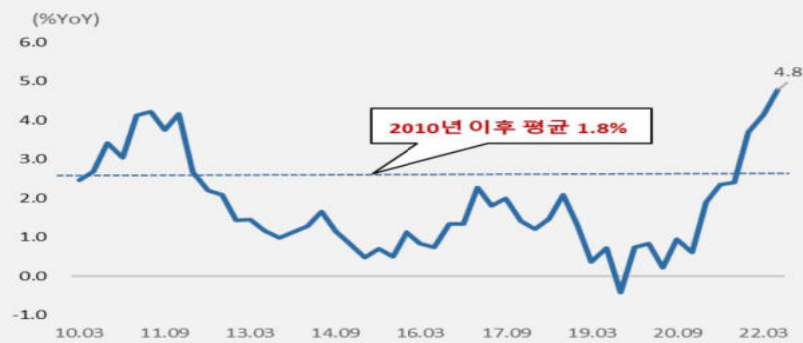


한국조세법학회 2022년 제31차 춘계학술발표대회 토론

자산축적의 필요성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여야,
연평균 물가상승률 1.8%

2012.3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자산축적의 필요성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은 올해 물가상승률 4.5%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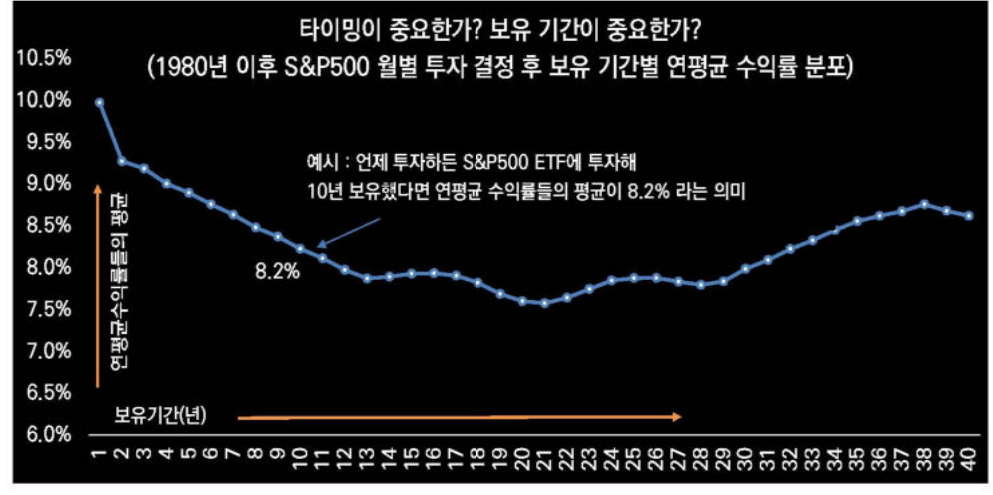
[자료: 연암뉴스 20220526 기사]

자산배분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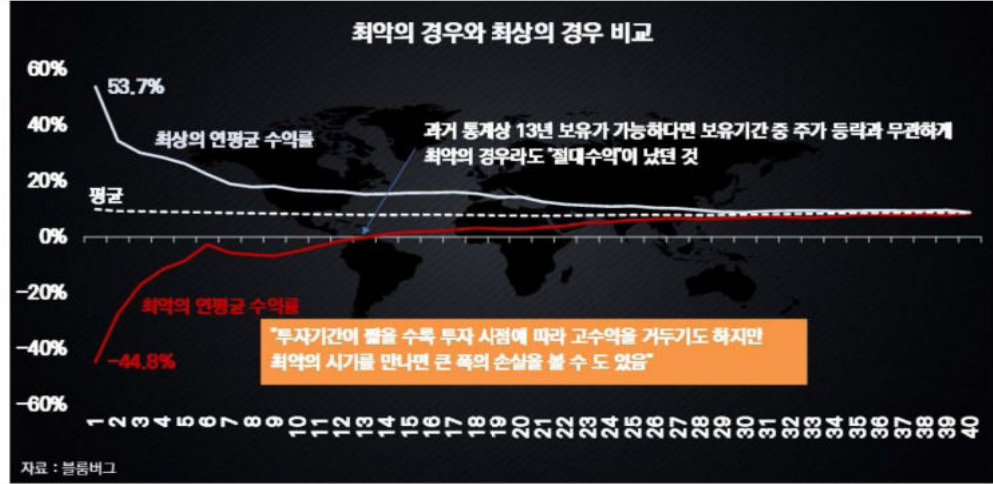
자산배분의 시대

연평균 수익률, 단기 투자가 높을까? 장기투자가 높을까?



자산배분의 시대

타이밍을 버리고, 타임 넣기



자산배분의 시대

10년사이 전세계 최고 주식 20종 '70%는 교체'

[2011 전세계 TOP20 기업]					[2021 전세계 TOP20 기업]				
순위	종목명	국가	섹터	시가총액(십억\$)	순위	종목명	국가	섹터	시가총액(십억\$)
1	애플	미국	에너지	417	1	애플	미국	정보기술	2,051
2	테슬라	중국	에너지	326	2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정보기술	1,778
3	알리바바	중국	금융	251	3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정보기술	1,778
4	중국 공상은행	중국	금융	251	4	아마존닷컴	미국	커뮤니케이션	1,588
5	BHP	호주	소재	248	5	알파벳	미국	커뮤니케이션	1,393
6	테드브러크스	브라질	에너지	247	6	테드브러크스	미국	커뮤니케이션	839
7	중국건설은행	중국	금융	233	7	테드브러크스	중국	커뮤니케이션	793
8	로열 더치 쉘	네덜란드	에너지	229	8	테슬라	미국	자동차	641
9	셸브로	미국	에너지	216	9	알리바바 그룹	중국	자율소비재	614
10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정보기술	213	10	버크셔 해서웨이	미국	금융	588
11	GE	미국	산업재	213	11	TSMC	대만	정보기술	634
12	버크셔 해서웨이	미국	금융	207	12	비자	미국	정보기술	468
13	네슬레	스위스	필수소비재	199	13	제이피모건제이스	미국	금융	465
14	IBM	미국	정보기술	199	14	존슨앤드존슨	미국	건강관리	433
15	가스프롬	러시아	에너지	191	15	삼성전자	한국	정보기술	431
16	알파벳	미국	커뮤니케이션	189	16	구이저우 마오터이	중국	필수소비재	386
17	차이나오펜	중국	커뮤니케이션	185	17	앨버트	미국	필수소비재	383
18	제이피모건제이스	미국	금융	184	18	맥스타카	미국	정보기술	354
19	HSBC 홀딩스	영국	금융	182	19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미국	건강관리	352
20	앨버트	미국	필수소비재	182	20	LVMH	프랑스	자율소비재	337

시가총액 합산 = 4,631
미국비중 = 51%

시가총액 합산 = 16,274
미국비중 =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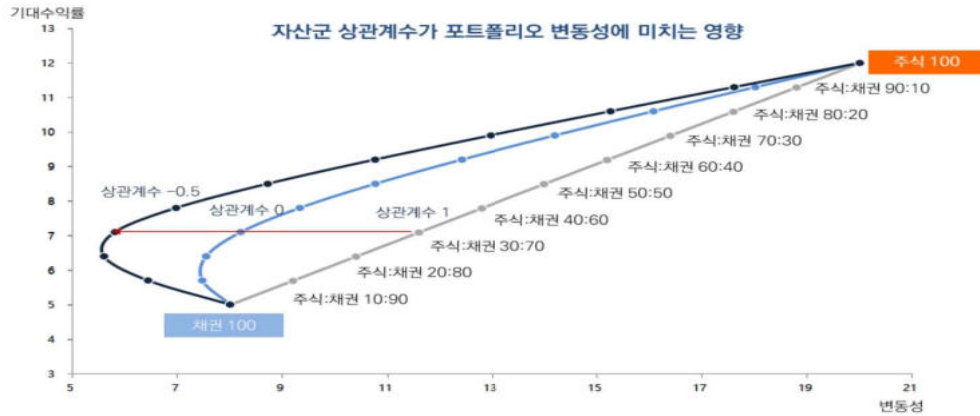
자산배분의 의의

경기 사이클에 따라 자산군의 성과 매년 다름, 종목 선정이 어려움!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미국주식	37.47%	28.92%	21.63%	31.63%	33.28%	38.88%	41.74%	12.17%	74.65%	20.88%	6.23%	24.98%	81.48%	13.23%	9.89%	14.76%	38.88%	46.78%	23.03%	21.20%	38.22%
중국주식	3.29%	14.18%	51.59%	22.45%	43.52%	36.44%	36.44%	15.74%	15.23%	13.88%	13.88%	13.88%	13.88%	13.88%	13.88%	13.88%	13.88%	13.88%	13.88%	13.88%	13.88%
일본주식	8.47%	11.42%	15.73%	15.67%	20.33%	19.18%	20.25%	4.88%	61.80%	16.28%	6.88%	19.21%	17.37%	15.13%	4.23%	9.54%	21.26%	1.48%	23.16%	16.28%	14.23%
한국주식	1.71%	0.81%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유로존주식	3.12%	3.52%	30.71%	12.41%	21.61%	15.52%	12.78%	36.28%	12.78%	6.88%	15.07%	7.98%	6.57%	5.13%	5.28%	19.42%	-6.81%	15.42%	9.07%	13.48%	11.48%
인도주식	-0.73%	-0.23%	-1.14%	29.12%	11.46%	16.78%	9.98%	10.15%	20.15%	11.81%	-0.07%	15.15%	2.88%	4.37%	1.50%	5.65%	14.18%	-1.51%	15.21%	7.23%	6.03%
브라질주식	1.98%	0.47%	1.42%	15.67%	20.33%	19.18%	20.25%	4.88%	61.80%	16.28%	6.88%	19.21%	17.37%	15.13%	4.23%	9.54%	21.26%	1.48%	23.16%	16.28%	14.23%
러시아주식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호주주식	1.71%	0.81%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인도네시아주식	-10.14%	-9.78%	-7.97%	36.38%	10.15%	11.42%	11.42%	11.42%	11.42%	11.42%	11.42%	11.42%	11.42%	11.42%	11.42%	11.42%	11.42%	11.42%	11.42%	11.42%	11.42%
대만주식	-28.46%	-13.04%	-8.54%	28.76%	9.51%	8.59%	8.28%	-41.77%	23.45%	8.88%	-9.31%	12.51%	0.72%	1.09%	-0.88%	7.26%	10.19%	-18.34%	13.73%	4.84%	0.71%
싱가포르주식	-15.12%	-15.12%	-15.12%	19.49%	8.99%	3.28%	3.28%	13.20%	7.28%	-10.96%	9.38%	0.03%	0.39%	-0.41%	1.34%	7.48%	-15.31%	15.06%	1.56%	-1.24%	-1.24%
중남미주식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일본채권	-19.93%	-19.93%	-19.93%	5.47%	5.48%	5.48%	5.48%	-0.17%	-49.37%	4.24%	2.21%	-18.34%	-7.23%	-1.29%	-4.83%	-1.29%	1.25%	17.28%	5.20%	-4.04%	-1.29%
미국채권	-15.12%	-15.12%	-15.12%	2.11%	0.85%	1.90%	1.90%	-0.79%	-60.76%	2.23%	-10.82%	1.58%	-1.86%	-4.76%	-10.96%	-1.86%	0.84%	-17.89%	3.51%	-7.38%	-1.29%
한국채권	-34.31%	-31.98%	2.47%	-37.71%	0.85%	-18.07%	-12.22%	-54.48%	-0.87%	-2.58%	-20.41%	-0.01%	-4.96%	-32.08%	-32.96%	-36.77%	0.82%	-54.76%	4.20%	-34.02%	-11.83%

자산배분의 의의

공짜 점심 먹고 배부르기



분산투자는 위험을 줄이면서도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
BUT, 소득통산이 안되는 우리나라!

올바른 투자문화 형성을
 위해서라도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손익
 통산은 절대적!!**

정책 제언

- ❖ 자본시장의 육성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해서도 손익 통산은 필수
 - ❖ 통산에 의한 분산효과로 인해 엔젤투자 (스타트업 및 벤처 지분투자) 가능
 - ❖ 현행 시스템은 재무이론에서 검증된 분산투자를 저해하고 있음. 글로벌 분산투자로 인해 저성장 저금리 상황 하에서 안정된 국민들의 소득 수준 상향 가능
 - ❖ 국민들의 올바른 투자문화 조성으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세수 증대 가능
 - ❖ 자본시장의 육성은 시중 자금 물꼬를 바꿔 부동산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정책 제언

- ❖ 예정대로 23.1월 금융투자소득세 진행
- ❖ 다만, 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세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손익통산에 포함** 및 **주식 등의 공제한도 상향 추진**으로 신정부의 주식양도세 폐지 정책 목표도 달성 가능

손영철*

- 금융세제 및 가상자산세제의 정책방향 -

존경하는 문성훈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을 쓰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발제문에는 현행 금융상품 세제의 문제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의의, ISA 제도 및 가상자산의 과세에 이르기까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세제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금융세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문은 금융세제를 크게 금융투자소득세, ISA세제, 가상자산세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문정부의 금융세제정책을 평가하고 나아가 윤정부의 금융세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자 역시 문교수님의 평가와 정책제언에 크게 동감할 뿐 반론을 제기할 점이 별로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는 제 나름의 문정부의 금융세제 정책방향을 평가하고 윤정부의 금융세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문정부의 금융세제 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옳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밝히고 있듯이 현행 금융세제는 금융상품별 칸막이 과세로 인하여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이 저해되고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로 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를 합리화하고 금융상품의 자본이득에 대한 포괄주의적 과세를 원칙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새롭게 도입한 것입니다. 가상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입법안을 마련한 것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비추어 보면 마땅한 입법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금융세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신탁의 과세제도 있어서도 일대 변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신탁산업의 활성화와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한 법인과세신탁과 위탁자과세신탁 등이 그렇습니다. 금융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문정부하에서의 금융세제 개선방향은 금융상품의 합리적 과세를 위한 진일보라고 평가하며,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세무사, 법학박사

윤정부는 2022년 대선과정에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를 폐지한다는 정책공약이 있었고 그 이행을 위하여 2023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를 폐지 내지 그 시행의 연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으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면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서 인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는 투자자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금융회사와 오랜 기간 논의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불리한 과세제도의 시행을 금융회사가 묵인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자본이득에 대한 포괄주의적 과세는 자본손실에 대한 투자위험을 국가가 인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투자자의 투자위험에 대한 전가는 위험자산(주식)에 대한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이 자본이득에 대한 포괄주의적 과세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실증적 분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를 폐지 내지 그 시행을 이연한다면 정치논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세법을 운영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비추어 보거나 금융시장의 선진화에 비추어보아도 금융투자소득의 시행과 가상자산의 과세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제로 향후 윤정부의 금융세제 정책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하여

1) 증권거래세의 폐지

증권거래세는 당초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한 조세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포괄주의적 과세가 이루어지면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명분도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면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시장은 실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간산업의 하나입니다. 세수는 실물시장에서 충족하면 되고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국제적 정합성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과세 논란을 야기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원천징수제도 제고의 필요성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의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점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 원천징수제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소득지급자(또는 그 대리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는 조기에 조세징수의 효과를 얻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상 원천징수는 급여나 이자, 배당 등 통상소득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자본이득이기 때문에 수시로 자본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원천징수한다하더라도 다시 환급하는 일이 매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도입은 그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행 세법도 이점을 감안하여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간을 월별이 아니라 반기별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반기에 손실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자(금융회사)가 환급해주어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뿐만아니라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도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투자자가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지(1안) 아니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공통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지(2안) 선택지가 놓이게 됩니다. 여러 논쟁의 결과 현행 세법은 소득공제한도금액을 별도로 관리하는 기관을 두고 그 기관이 제공하는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정보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이 소득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2안 채택). 통상의 원천징수와 달리 매우 복잡한 원천징수제도의 운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본이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는 이처럼 제도운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자신의 금전을 운영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합니다. 자본이득은 금융시장의 이상변화를 투자기회로 하여 획득하는 투자수익입니다. 투자자가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여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려 할 때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전은 투자에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 세법이 투자자가 금융계좌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원천징수상당액은 그 지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하에서 원천징수제도가 어렵게 운영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가 완전히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의 이행이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투자자에게 결손금이 발생한다거나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스스로 확정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제도운영의 어려움, 자금운용의 기회상실, 자발적 신고의무이행의 보편화 경향 등을 감안하여 원천징수 보다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이행을 종료하고 싶은 수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면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자금을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이원적 소득세제로의 이행

아울러 2023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제는 더욱 발전하여 이원적 소득세제로 전환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상품의 자본이득에 대한 광범위한 통산을 의미합니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금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자나 배당금도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개념적으로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자와 배당금 모두를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분리과세하면 부자에게 감세의 효과가 발생하여 수직적 공평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단순한 포트폴리오 투자자가 수령하는 배당금과 채권의 이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가상자산의 이득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

현행 세법은 금융투자소득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으로 정의하고 그 적용범위를 세법에 열거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도 세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아니지만 이익과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가상자산의 이익과 관련하여 연단위 통산을 순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지만, 금융투자소득과 차별하여 과세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가상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자본이득일 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다른 금융상품과 넓은 통산을 허용함은 물론이고 순손실이 발생하면 5년간 이월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이익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논리상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ISA 일원화와 가입제한의 폐지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혜택은 금융상품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하고 각각 다른 적용요건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혜택을 금융상품별

로 각각 시행하는 것은 그 관리가 어렵고, 조세혜택을 철회하는 것에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혜택을 ISA 하나로 일원화하고 투자자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현행 ISA 가입제한과 관련하여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는 일반형의 경우 19세 이상의 거주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되, 직전 3년 중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 적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이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아마도 부자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부자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인 듯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ISA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연간 2천만원, 전체 1억원 한도 자체가 부자의 ISA 가입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수단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정부의 기업조세 - 기업유보소득 간주배당과세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과세제도의 도입이 포함되었습니다. 간주배당과세제도는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의 조세부담이 낮은 점을 이용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인의 배당이사결정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이상 유보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주주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물론이고 배당과 사내유보의 선택에 대한 기업의 자율을 침해하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비판이 따릅니다. 외국의 입법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전에 학계는 물론이고 업계와도 충분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개정안 발표이후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도입이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개인기업보다 세부담이 적은 법인기업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 제도의 도입의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주배당과세방식이 최선의 방법이었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간주배당소득세 과세방침은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업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고, 우리 세무사업계도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곤경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은 업계 및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 교*

- 기업세제 및 관련 조세정책 -

1. 새정부가 출범한지 1개월 정도 지났으므로 지난 정부의 조세정책을 평가하고 새정부의 조세정책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세제 및 국제조세, 금융세제 및 가상자산세제, 개인소득세제 및 상속세제 등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주신 발표자들에 감사드립니다.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제 의견을 덧붙이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기업세제 및 국제조세

가. 기업세제

(1) 법인세율

국제적으로 법인세율은 단일세율로 통합되는 추세임. OECD 국가 중 26개국이 단일세율을 채택하고 있고, 9개국이 2단계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4단계의 세율체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배당성향이 낮아 과세가 이연되는 문제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세부담 문제를 고려하면 2단계 정도의 세율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한편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로서 OECD 평균 최고세율인 23.5%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외국의 법인세율 변동추이를 지켜보면서 법인세율 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법인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비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임. 우리나라는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을 구분하고, 이를 다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나눈 후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화하고 있음. 일반법인보다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이 높고, 비상장법인보다 상장법인의 익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불산입률이 높으며, 지분이 많을수록 익금불산입률이 높음. 미국, 일본, 유럽 등과 비교할 때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은 유사하나,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이 낮은 수준이므로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은 자금, 인력,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하므로 대기업보다 조세감면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음. 그러나 조세지원의 방식과 체계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등과 같은 일반적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세제혜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장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으로 머무르고 싶어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일률적 세제혜택은 축소하고, 그 대신 투자, 기술개발, 창업 등의 행위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반도체, 백신, 배터리 등과 같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조세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국제조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투자로 벌어들인 배당소득에 대하여 현재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다수 국가들이 원천지국과세인 배당면제제도(Exemption method)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해외투자에 대한 배당면제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면제제도를 도입하면 해외유보소득의 원활한 국내유입으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2) 디지털세에 대한 대처

2021년 10월 디지털세의 합의사항인 pillar 1, 2의 시행과 관련된 입법, 행정 등의 준비를 하여 그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금융세제 및 가상자산세제

가. 금융세제

(1) 주식 양도소득세

우리나라는 1991년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1999년 지분율 5% 초과 대주

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한 후 대주주의 범위 및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넓혀 왔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3년 전면적인 양도소득세 과세를 앞두고 있음.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부동산, 파생상품 등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물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점,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대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2개의 큰 축으로 하는 변칙증여의 대응역량을 약화시켜 소득세 뿐 아니라 증여세 과세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2023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가 5,000만원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주로 대주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행처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교과세방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비교과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인하여 2,000만원 이하 부분에서는 일률적으로 14%의 세율이 적용되어 금융저소득자는 세부담상 불리하고, 금융고소득자는 유리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교과세방식이 초래하는 불공평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기준금액을 1,0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연금소득

고령화사회가 앞당겨지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연금상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금상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가상자산세제

(1) 소득구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2) 시행시기

세제는 경제논리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치논리에 의하여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타당함.

4. 개인소득세제 및 상증세제

가. 개인소득세제

(1)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과 물가연동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대하여 2009년 이후 10년 넘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명목 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3~4년마다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수 및 세율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수는 8개로 국제기준과 비교하면 많은 편이고 높은 단계의 세율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신설되어 전체적으로 체계성을 결여하고 있음.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은 6%, 15%, 24%, 33% 4단계로 운영되다가 2012. 1. 1. 개정으로 33% 대신 35%, 38%가 신설되어 5단계, 2016. 12. 20. 개정으로 40%가 신설되어 6단계, 2017. 12. 19. 개정으로 42%가 신설되어 7단계, 2020. 12. 29. 개정으로 45%가 신설되어 8단계가 되었음. 35%부터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이 촘촘하게 5개에 이르므로 이를 2~3개 정도로 줄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부동산임대소득과 주택임대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당초에는 사업소득과 별도의 소득유형으로 구분하였으나, 2009. 12. 31. 개정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소득에 포함시킴.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형식적 분류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은 대표적인 수동소득으로서 다른 사업소득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소득유형으로 분류하고 사업소득과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하고 있으나, 고소득자에게 유리하여 공평성을 침해하므로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종합과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단순경비율 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불일치 조정

2021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범위가 기존 4,800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소득세의 단순경비율 사업자와의 간극이 커짐(계속사업자 단순경비율기준 도소매업 등 6,000만원, 제조업 등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등 2,400만원). 소득세의 단순경비율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제도의 취지가 비슷하므로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상증세제

(1) 증여재산공제 상향조정

우리나라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임. 고령화사회가 가속화됨으로써 경제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상향조정하여 노령층에서 젊은층으로 부의 이전을 촉진시켜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2) 유산취득세 방식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 실시, 국세청 통합전산망(TIS) 도입 등으로 유산의 위장분산이 쉽지 않으므로 응능부담원칙을 실현하고 상속세의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3) 자산평가

납세자가 상속세, 증여세 등의 신고를 하기 전 또는 자산양도 등의 거래를 하기 전에 자산에 대한 평가를 사전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국제조세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하여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산평가에 있어서도 사전확인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사전확인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큼.

최영록*

□ 주제 : 문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윤정부의 조세정책방향

- 문정부의 조세정책방향 :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
 -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고소득층 과세강화, 서민·중산층 지원)에 역점
 - 저성장·양극화 극복 재정 뒷받침(세입기반 확대 등)
 - ⇒ 부동산 세제 등 일부 과도·복잡
- 문정부의 조세정책방향 (7월 세법개정안 발표시 제시 예정)
 - ⇒ 조세원칙(공평성, 합리성, 단순·효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세제 구축, 소득·법인세 과표·세율체계, 상속·증여세 공제·세율·과세체계, 부동산세제 등 전면 재검토 필요

□ 주제별 발표 및 토론

(1) 기업조세 및 국제조세의 정책방향 (이성봉 교수)

- 기업조세 개편방향 : 일자리창출 주역인 기업의 투자와 고용 촉진
 -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제고 및 투자활성화 촉진
- 제도의 평가 : 16년이후 직접투자 순유출 급속 증가, 리쇼어링 미미, 국내외 법인간 배당 비과세·이중과세방지 제한적
- 세제개편 방향 : 투자확대
 - 법인세율 인하(25% → 22% → 장기적으로 20%이하 수준)
 - 투자세액공제 확대(좋은 일자리창출과 연계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완화 및 기한 연장
 - 특허박스제도 도입,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확충 및 준비금 한시 재도입
 - 법인간 배당 및 해외자회사 국내배당에 대해 95% 소득면제 도입
 - ⇒ 법인세율체계 간소화, 세율조정 검토 필요, 투자세액공제 실효성 제고(통합투자세액공제 평가 필요 시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문제는 세입기반 확대 관련 사항, R&D지원제도의 대상·체계·지원수준 타당성·적절성 지속 검토, 이중과세조정제도 타당성·적정성 검토 필요

* 삼정회계법인 고문, 경제학박사·(前)기재부 세제실장

(2) 금융세제 및 가상자산세제의 정책방향 (문성훈 교수)

○ 문정부 금융세제정책 평가 :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대주주과세강화 정책 좌초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23년) : 조세중립성 및 단순성 개선, 수평적 조세형평 및 국제 정합성 제고, but,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여지, 금투소득 포괄주의 문제, 그룹별 기본 공제 차등문제, 금융소득과의 형평문제
- ISA제도 개편 ; 20년말 영구화, 가입요건 폐지, 투자중개형 신설 등 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국민자산형성 지원 목표 달성 기여, but, 소득수준별 차등 의문
- 가상자산 소득세도입 : 과세형평 제고, but 기타소득 과세는 형평, 중립성 저해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및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확대 미시행으로 수직적 공평성 미흡, 금투소득세 도입과정에서 범위축소, 시행연기 등 미흡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조세 중립성, 형평성, 합리성 제고에 기여, 미시행 정책 : 소득재분배 및 세입기반 확대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종합고려, 장기과제로 지속 검토필요(면세자비율 축소 등과 종합적)

○ 신정부의 금융세제 정책방향 및 향후 정책제언

- 신정부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대주주 대폭상향), 가상자산 과세는 제도정비시 까지 유예, 금투소득과세 2년간 유예 및 거래세 추가인하
- 정책제언 : 금투소득 및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구체적·합리적 로드맵 제시, 향후 과 세시행시 금투소득 범위확대(이자·배당, 가상자산 소득 등), 거래세 인하·폐지(대체 세수 충당), ISA 보완 필요
⇒ 금융시장이 혼란한 상황(세법개정, 국회 구조등 감안),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 및 개정안 발표, 국회 설득 및 조기합의 필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후 보편적 정 착단계에서 투자소득범위 확대 및 거래세 보완·폐지 검토 필요

(3) 개인소득세 및 상증세제의 정책방향 (최원 교수)

○ 문정부 증세공약 : 고소득자, 고액 상속·증여, 자본이득 과세강화

- 소득세율,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공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 가업상속공제 조정, 신고세액공제 축소 등 제도상 개혁은 뚜렷한 것이 없음
⇒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대 등 차원에서 추진

○ 신정부 세제개혁 공약·평가 및 제언

- 공약 및 평가 : 스톡옵션 지원강화, 가업승계 업종제한 폐지 등 기업경쟁력 강화, 주

식양도소득세 폐지 등 금융선진화 등, but, 과감한 세제개혁 필요

- 소득세제 개혁 : 물가연동형 세율제도 도입, 독일의 2분2승제 도입
- 상속세제 개혁 : 중산층 상속세율 20%이하로 인하, 최고세율(200억초과 40%), 유산취득세 도입(일본의 변형된 유산취득세제)
- 증여세제 개혁 : 공제 확대(배우자 10억원, 직계존비속 1억원)

⇒ 소득세 : 공제·과표·세율체계 재검토 필요 시점, 물가연동제 장기과제(타세목)

상속세 : 유산취득세제(순수) 개편, 세율체계 조정 필요

증여세 : 공제확대 및 세율체계 조정 필요

한국조세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명칭) 본 편집위원회는 (사)한국조세법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사)한국조세법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의 『조세논총』(The Korean Journal of Taxation) (이하 “논문집”이라 규정함)의 발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기능)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② 본 학회의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
- ③ 기타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제 4 조 (구성 및 임무) ①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③ 편집위원은 심사자를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④ 본 위원회는 논문의 심사 및 발간,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제 5 조 (임기) 본 위원회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현 편집위원장은 후임편집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임명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편집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

제 6 조 (임면과 자격) ① 편집위원장은 (사)한국조세법학회의 학회장이 임면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자격은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조세법학, 조세정책학, 세무회계학, 조세행정학 등 관련 분야 학술논문, 학술대회발표, (편)저서, 역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2. 최근 3년간 조세법학, 조세정책학, 세무회계학, 조세행정학 등 관련 분야 대외활동(학술대회 발표, 경력사항, 수상내역 등)이 탁월한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외국 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역임한 자

- 4. 최근 3년간 S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게재실적이 탁월한 자
- 5. 기타 조세법학, 조세정책학, 세무회계학, 조세행정학 등 관련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자

④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교수 이 외에도 학교,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단체 및 기타 연구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 7 조 (편집위원의 준수사항) ① 편집위원은 논문투고자의 인격과 학자적 양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논문투고자의 학력, 지역, 성별, 나이, 소속기관, 친분관계 등에 의거 선입견을 갖지 않고 오로지 편집위원회규정에 의거 논문의 질적 수준에 따라 우수한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논문투고자의 신원 및 논문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연구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운영) ① 편집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연 4회 이상 소집 및 주관하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전화나 E-mail, 사이버편집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논문의 심사 및 발간,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와 관련된 사항의 의결을 위해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필요 경비는 (사)한국조세법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④ 편집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 9 조 (편집방침과 투고요령) 본 학회의 논문집에 대한 편집방침과 투고요령은 본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사)한국조세법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사항을 위임받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훈령 제15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11.3.)」에 따라 (사)한국조세법학회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연구자”란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 게재하는 모든 자, 본 학회의 이름으로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과 관련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대상으로 한다.

1. 「조세논총」에 투고된 논문

2. 「조세논총」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

3. 「조세논총」에 이미 게재된 논문

4. 기타 (사)한국조세법학회의 명칭으로 간행된 연구결과물

제2장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 및 학회의 책임

제4조 (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다른 간행물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의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학위논문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진행 이전에 편집위원회에서는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율이 25% 이상인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거부, 수정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또는 소명요구를 받은 연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 7 조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 8 조 (학회의 역할과 책임)** ①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부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자 상호 관계의 공정성

제 9 조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저자표시 순서)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저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신저자) ①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12조 (저자추가 및 변경) ① 논문의 최종저자는 투고단계의 저자 외에 수정단계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저자만 인정된다.

② 논문심사가 종료되어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저자추가 또는 저자변경 및 저자순서 변경은 금지된다.

1. ‘저자추가’란 투고단계에서의 저자 외에 새롭게 저자를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저자변경’이란 저자추가는 없지만 기존저자가 빠지고 새로운 저자로 대체되는 경우,

또는 저자표시 순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교신저자가 수정단계에서 저자추가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편집위원장을 참고로 하여 전체 저자들에게 허락을 득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모든 저자들로부터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 ④ 교신저자가 공동저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저자추가 및 변경을 하거나, 한사람의 공동저자라도 저자변경 및 저자추가를 거부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저자추가 및 변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게재가능 판정이후 교신저자가 임의로 저자추가 또는 저자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가 취소된다.

제13조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 4 장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⑦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⑧ 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15조 (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원문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17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16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①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게재되는 논문 및 연구결과물은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사)한국조세법학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부적절한 출처인용
2. 참고문헌 왜곡
3.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4.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제20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하거나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21조 (텍스트의 재활용) ①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심사과정의 공정성

제22조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자는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단,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③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23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24조 (사적 상충 및 지적 상충)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① 심사자는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私的)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지적(知的) 상충이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6장 논문 관리의 공정성

제25조 (편집위원장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장은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7 장 윤리규정 시행과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26조 (윤리규정 서약) (사)한국조세법학회의 연구수행과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시 본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27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목적)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가 정한 본 연구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에 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을 포함해 연구윤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윤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함)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편집위원장과 학술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소집에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1조 (연구윤리위원회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3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학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4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5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 ②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함)를 둔다.
- ③ 연구자의 소속 기관 등의 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고자 학회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의 소속 기관, 대학 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본 학회에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장은 본 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전체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으로 한다.

제37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를 학회에서 검증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③ 학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39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사실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며, 피조사자에게 30일 이내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신고 접수일에서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③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0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예비조사 착수 후 본조사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학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2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 (판정) ① “판정”은 학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 (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학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본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학회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6조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44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이사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 (조사결과의 제출) ① 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③ 학회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8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한다.

1. 게재 확정된 연구논문의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게재를 보류한다.
2. 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의 목록에서 삭제한다.
3.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연구자에 대하여 3년간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논문투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한국조세법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4. 『조세논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해당 내용의 세부 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제49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2 (사)한국조세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제31차 -

2022년 6월 2일 인쇄
2022년 6월 3일 발행

발행인 : 김 병 일
발행처 : (사)한국조세법학회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서초3동 1497-16)
한국세무사회 별관 2층
전화 : 회 장 김병일 (010-3344-4170)
총무이사 김진태 (010-3018-8083)
총무간사 황정원 (010-4577-2841)

제작처 : 씨에프오아카데미 대표이사 전병문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9길8(역삼동) 아이네트빌딩 4층
전화 : 010-5230-7027
E-mail : jbm@naver.com
